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한국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한국, 제 60차 세션

2017. 3. 20

참여단체(총 63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 총 6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두레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땅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총 27개 단체 및 모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 / 총 16개 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실의 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 의전화,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목차

1. 고문의 정의 및 형법 개정	4
2. 국가보안법	6
3. 핫라인센터	7
5. 사법부 독립 및 법관 정년 보장	12
6. 긴급체포	13
7. 고문, 자백	14
8. 부부강간 및 가정폭력	15
9. 여성, 아동 인신매매	17
10. 난민신청인 추방, 귀환, 송환	20
11. 추방, 귀환, 본국송환 거부 및 외교적 보장	23
1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범죄의 역외 관할권	24
13. 대용감방	25
14. 고문피해자 배상	26
15. 고문신고센터	27
16. 고문범죄 공소시효	28
17. 이주노동자 학대 진정 및 조사제도	29
1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능과 독립성	33
19. 고문피해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36
20.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
21. 고문으로 인한 진술	38
22. 서면의 증거능력	39
23. 구금시설 사망 조사	40
24. 군 내 자살원인 규명 및 예방훈련	42
25. 독방구금 및 징계구금, 국가인권위 고문신고센터 진정	44

26. 2008 촛불집회 체포 및 물리력 사용.....	46
27. 정신질환치료 및 시설	48
28. 가정과 학교 체벌 관련 법률, 교육조치	50
29. 이주민 권리보호	52
30. CAT 선택의정서 비준 및 국가예방기구 설립	62
31. 대 테러조치	63
32. 제2차 보고서 이후 인권보호 법률적· 제도적 진전.....	64
33. 제2차 보고서 이후의 NAP	64
34. [추가이슈] 형제복지원.....	65
35. [추가이슈] 대구 희망원	66
36. [추가이슈] 신안 염전노예.....	68
37. [추가이슈] 집회시위 국가폭력(밀양, 강정, 쌍용자동차).....	71
38. [추가이슈] 세월호	74
39. [추가이슈]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문제	77
40. [추가이슈] 일본군 위안부.....	78
41. [추가이슈]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79
42. [추가이슈] 감염병 격리	80
43. [추가이슈] 보호감호, 보호수용, 보호관찰	83
44. [추가이슈] 군영창	84
45. [추가이슈] 성소수자	86
46. [추가이슈] 교정시설 내 HIV/AIDS 처우.....	91

1. 고문의 정의 및 형법 개정

(질의목록 1)

1. 현재까지 협약의 고문에 관한 정의(제1조)를 포함하는 고문범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나 개정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등 형법 및 여러 형사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고문의 모든 유형이 범죄화되고 처벌되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¹을 되풀이하고 있다.² 정부의 주장은 고문행위가 국내법상 어떤 형태로든 처벌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인데, 이는 고문범죄의 실질을 충실히 반영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고 고문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협약의 요청 및 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³
2.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는 협약 제1조에 상응하는 고문범죄의 처벌규정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불충분하다. 첫째,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만을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기관 또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둘째, 게다가 위 처벌규정들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제124조) 또는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제125조) 체포·구금하거나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요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구금상태 하에서 행하는 고문에 대해서는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의 일반적인 처벌규정인 체포·감금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이 적용될 뿐이다.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에 의한 고문이나 수사·재판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고문에 대해서는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를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구금시설의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고문을 가하는 범죄는 고문방지협약의 고문개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적용요건상의 제약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고문범죄를 형법 제125조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⁴
3. 협약 제4조에 따르면 고문범죄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⁵ 양 처벌규정은 형량의 면에서 고문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한 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첫째, 형법 제125조의 징역형 상한은

¹ CAT/C/32/Add.1 Paras. 105-111 ; CAT/C/53/Add.2 Paras. 28, 100-101.

² 정부보고서 Para. 3.

³ 오병두, (2008).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민주법학 37, 185-190.

⁴ 광주고등법원 1992. 11. 21. 선고 92 초 43 결정. 교도관의 고문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125 조가 아니라 형법 상의 일반 처벌규정인 폭행죄(제 260 조 제 1 항)가 적용되면 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⁵ 불법체포·감금이나 폭행·가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 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공무원의 단순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와 동일하고, 일반 처벌규정인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가 고문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정한 형사처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둘째,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의 관계를 볼 때, 고문범죄에는 형법 제125조가 주로 적용될텐데, 형법 제125조의 형량은 제124조의 형량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문방지협약이 요구하는 고문개념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고문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⁶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동법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2항 제5호와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2항 제2호에 “고문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법률에는 고문에 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으며, 무엇보다 그 처벌규정들은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동법 제9조 제2항 제5호는 고문이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10조 제2항 제2호는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 대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고문방지협약의 고문개념에 상응하여 고문범죄의 적정한 처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
5.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형법 제125조를 협약 상의 고문 개념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⁷ 그러나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2009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8년이 경과하였지만, 형법 개정에 관한 논의내용을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협약의 고문개념을 반영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학계나 인권단체와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6. 정부는 공무원의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형법 제125조는 협약의 고문의 정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마저도 교정시설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고문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은 교도관의 경우

⁶ 정부보고서 Para. 4.

⁷ 정부보고서 Para. 5.

원칙적으로 형법 제125조 위반은 적용할 수 없고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것 역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협약에서 의미하는 고문범죄의 심각성이 고려된 형사처벌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 국가보안법

(질의목록 2)

1.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에서 존재의의를 가지며, 동법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 더욱 확대 적용되어 악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46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129명까지 확대되고 구속기소된 인원도 70명에 달하게 된 것이다⁸.
2. 그 이전 정부 소속의 통일부의 승인 하에 진행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북측과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는가 하면⁹, 사진작가 박정근은 인터넷에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등¹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3. 또한 2015. 1. 22. 대법원은 ‘혁명동지개’를 제창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2014도10978). 이에 동조하듯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으로 결정하며 관련 조항이 확대해석 내지는 법 해석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재확인 하였다(2012헌바95). 이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의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4.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95년, 2011년 두 번에 걸친 방문에서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 자유권 규약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였다. 특히 제7조 찬양고무의 경우, 법 규정이 모호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해온 역사가 있으며, 이후에도 침해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수 차례 권고하였다.
5.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⁸ 범죄유형별公安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IL>

⁹ 검찰, 범민련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프레시안, 2009. 6. 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5549>

¹⁰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CNN, 2012. 7. 4., <http://edition.cnn.com/2012/07/03/world/asia/south-korea-north-joke/>

있으며, 대검찰청(Supreme Prosecutor's Office)의 2016년 자료¹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속된 인원만 118명에 달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Number of people who are investigated	46	57	97	90	112	129	57	79	43
Number of people who are criminal detained	16	18	32	19	26	38	7	26	21
Number of people who are indicted and tried	27	34	43	39	59	70	34	50	27

6. 2011. 8. 23. 법원은 소위 '왕재산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 및 북한인사와 접촉했다는 혐의로 5명에게 징역1년에서부터 징역7년까지 선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인도적 처사들이 벌어졌음이 밝혀졌다.

7. 피의자 신분이었던 5 명은 국가정보원의 신문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함을 이유로 가족 접견권을 제한당하였고, 일부는 수사관들에게 욕설, 모욕 및 위협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하였으며, 또한 구치소에서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인치되기도 하였다.¹²

8. 또한 한국계 미국인인 신은미는 북한을 여행 후, 한국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여행에 대한 감상을 토로하며, '나는 북한에 청소년 센터를 열어 북한 청소년을 돕고 싶다'고 발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 7 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하였고, 2015. 1. 10. 이를 이유로 강제추방시켰다.¹³

9. 이처럼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구속, 추방 및 이에 준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해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므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제7조를 포함한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핫라인센터

(질의목록 4)

¹¹ 범죄유형별公安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Statistics Korea, <http://bit.ly/1NJD9IL>

¹² CASE A-4: Wangjaesan Case; Suspects Ill-treated for maintaining silence during interrogations, National Security Act, Amnesty International, Nov 2012.
<https://www.amnesty.org/download/.../asa250062012en.pdf>

¹³ American set to be deported from South Korea for pro-North views, The Washington Post, 2015. 1. 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merican-set-to-be-deported-from-south-korea-for-pro-north-views/2015/01/08/d035acbd-9e1d-4c2f-95e8-e2c11a2c5795_story.html?utm_term=.c8481cbd5dec

1. 정부는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법무부의 자기통제적 기구이며, 가혹행위, 의식주 관련사건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⁴
2.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검찰이 운영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38건으로 한해 7건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의 경우 6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¹⁵ (이후에도 전국 18개 지검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 수는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6월 말까지 3건에 불과하다.)¹⁶
3. 그런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사 및 형 집행기관의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의 577배에 달했다.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을 보면 검찰이 834건, 경찰이 6225건, 사법기관이 432건, 구금시설은 8949건으로 나타났다.¹⁷
4. 이처럼, 검찰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동일 기관인 검찰청 청사 내의 민원실에 위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검찰의 인권보호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의자 신문 변호인 접견권

(질의목록 5)

1. 법적문제
 - 1) 관련법률
 -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변호인의 참여 등)

¹⁴ CAT/C/KOR/3-5, para. 15

¹⁵ ‘2013년 국정감사- 검찰 인권침해 센터 유명무실, 6년간 38건 신고’, 2013. 10. 31.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4146>

¹⁶ ‘김진태-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 작년 접수 0건’, 2016. 10. 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27800004.HTML?input=1195m>

¹⁷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2013. 10. 31.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310311848490015781_12

- a)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a)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b)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c)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d)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d-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 d-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 d-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d-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법적 문제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문제

- a) ‘정당한 사유’라는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판단에 의해 변호인접견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의 2의 문제

a) 제1항

a-1)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으로 "신문방해", "수사기밀누설"을 예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신문방해"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밀누설"의 경우 역시, 수사기밀의 범위와 누설행위의 양태 등에 대하여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법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무규칙이 적용되어 변호인접견권이 제한될 여지가 농후하다.

b) 제4항

b-1)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에서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할 때, 제4항의 규정들은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접견권을 형식적 요건으로 전락시켜 변호인 조력을 통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도록 한다.

2. 사례

1) 합동신문센터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문제 (집단탈북 여종업원 사건)

(1) 사실관계: 탈북여종업원 12명이 2016.4.7.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후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 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다. 국정원은 그들이 자유의지로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인접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변호인단이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¹⁸ 또한 변호인단은 유엔에 이 문제에 대하여 긴급청원을 제출하였다.

(2) 정부보고서 20번 항목에서, "특히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 아닌자와의 접견교통권 등을 침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탈북여종업원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2)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변호인 불법체포 문제

(1) 사실관계: 2009. 6.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권영국변호사가 노동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접견권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은 권영국변호사를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였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가 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¹⁸ <http://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southkorea-defectors-idUSKCN0Z60VN>

무죄를 구형하였다.¹⁹

(2)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체포한 경찰관은 공판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권변호사를 체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 권변호사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이유를 설명해줄 것과 접견권 보장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며 당시 경찰에 의한 변호인접견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²⁰

(3) 해당 사건은 변호인접견권이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수형소 내 변호인접견실 CCTV 설치문제 (2015헌마243)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4. 12. 27.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5. 1. 2.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2. 9. 서울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접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변호인접견실 근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교부한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봉투 속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 서류처리부에 서류의 제목을 기재한 뒤 변호인에게 돌려주었다. 청구인은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교부한 봉합서류를 개봉하고 서류의 표목을 기재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형소 내 변호인접견실에 cctv 설치가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금지물품의 수수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실 또한 계호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영상만 실시간으로 촬영할 뿐 영상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확대기능이 없으며 촬영 영상도 19인치 크기의 모니터에 16개로 분할되어 나타날 뿐이므로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변호인접견권의 보호는 단순히 접견 장소의 제공 등 접견기회의 보장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나 부당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접견

¹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80390>

²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7_0012442132&cID=10203&pID=10200

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5. 사법부 독립 및 법관 정년 보장

(질의목록 6)

1. 당초 판사 임기제도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발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변경된 것은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과 무관한 제도 변경에 불과하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²¹. 정해진 시점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승진하지 못한 판사는 퇴직하는 관행이 존재한다²². 다단계 승진제도와 승진에 실패한 법관이 퇴직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법관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은 2017. 1. 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2017. 1. 25.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부패전담재판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자들로 구성되어 승진을 앞두고 자기검열식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³. 즉, 다단계 승진제도는 법관의 임기 보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인사권자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3. 2013년과 2014년 경력직 판사임용시 국가정보원이 면접에 참가하여 예비법관 후보자들에게 ‘세월호에 대한 견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묻는 등 사상검증을 하였다²⁴. 또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사법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검찰출신 ‘박상옥’이라는 이름과 “(대법관후보)추천위 통해서 추진”, “법무부 짠 대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라는 글이 등장한 이후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난 이후에는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 홍강철 주심이 Key,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 멘트 필요’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²⁵. 이러한 사건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사법부 독립을 의도적으로 침해

²¹ 법원조직법 제45조 제3항

²² 문흥수 변호사,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3) 다단계 승진제도의 폐해」, 프레시안, 2006. 10.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3417>

²³ 차성안, 「이재용 영장 논란과 현직판사의 제안」, 시사인, 2017. 2. 16.,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32> (차성안 판사의 글을 시사인이 게재한 것임)

²⁴ 2015. 5. 27.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성명서

²⁵ 2016. 12. 13. 한겨레일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정부는 법원조직법, 법원징계법은 법관인사위원회와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규정을 두고 있고, 외부위원 존재로 인하여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한다²⁶. 그러나 관련 법률은 외부위원의 자격을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²⁷ 정하고 있는데, 법관 퇴직 후 변호사, 법학교수의 지위를 취득하는 한국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위원회 다양성 부재로 공정한 판단에 한계가 있다.

6. 긴급체포

(질의목록 7)

1.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긴급체포 남용이 심각한 문제이다. 영장체포란 수사기관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법관의 사전체포영장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구속에 선행하여 피의자에게서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이며 사전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 한 긴급체포(법 제200조의3)와 대별되며, 헌법(제12조 제3항)은 영장체포를 원칙으로 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긴급체포에 의한 체포가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긴급체포가 이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²⁸
2. 나아가 긴급체포가 된 피의자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되고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긴급체포 후 영장 미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18%, 2009년 21%, 2010년 18% 등 18% ~ 21% 수준이다.²⁹ 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상당한 증거 없이 일단 의심스러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신문한 후 혐의가 없으면 석방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 최원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436.html#csidx634f09d5d2de5b2b622179be4c8fde4

²⁶ 제 3, 4, 5차 국가보고서 29, 30

²⁷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4항, 법원징계법 제5조 제1항

²⁸ 2003년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자 수가 13,482명에 불과한데 반해 긴급체포로 체포된 자 수는 98,778명에 이른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인신구속자료집, 113.

²⁹ 경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발부, 경찰청 내부통계(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경우에도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13%~22%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구분	체포 건수(건)	영장미신청 건수(건)	영장 신청(건)	발부건수(건)	발부율(%)
'08년	13,654	2,482(18%)	11172	9537	85%
'09년	14,730	3,126(21%)	11604	9673	83%
'10년	10,308	1,883(18%)	8425	7046	84%
'11년	8184	1501(18%)	6683	5599	84%
'12년	8178	1761(21%)	6417	5335	83%

경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발부

연도별	긴급체포(명)	석 방(명)	석방률(%)
'08년	456	102	22.4
'09년	505	149	29.5
'10년	406	62	15.3
'11년	367	60	16.3
'12년 8월	198	27	13.6

※ 석방 건수 : 긴급체포후 영장불청구 + 판사기각 + 구속적부심 석방

검찰 긴급체포 후 석방현황[※2012 국감자료(최원식의원)]

7. 고문, 자백

(질의목록 8)

1. 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했던 이정훈, 한상렬 등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갱신처분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³⁰. 정부는 현행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관찰기간 갱신이 재범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³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등

2. 보안관찰법은 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³¹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2년마다 갱신되기만 하면 대상자는 사망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 폐지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사생활 자유의 침해가 필요최소한도는 이루어지도록 처분기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8. 부부강간 및 가정폭력

(질의목록 9)

1. 형사법상의 부부강간죄 명문화 문제

(1) 정부보고서는, 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과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³².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고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 흥기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강간죄가 인정된 경우이다. 또한 해당 판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강간죄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를 가정유지의 관점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사법기관이 부부강간죄를 포함한 배우자 성폭력을 다른 성폭력과 달리 형사범죄로 규율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강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형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법 체계 안에서 부부강간이 분명히 처벌되고 있는지 여부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성폭력 관련 범죄통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분류·집계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교차 분석도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형사사건 범죄통계에서도 나타나며, 정부가 배우자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형사범죄이자 성별화된 폭력으로 중요하게 보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에 최근 5년간 부부강간을 포함해 배우자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범죄 사건처리의 문제

(2)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은 2013년 15%, 2014년 13.3%, 2015년 8.5%³³로 갈수록

³¹ 보안관찰법 제16조 제1항

³² 정부보고서, 제41항.

³³ 정부보고서 부록, 표 3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 현황.

낮아지며, 가정폭력범죄는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가정유지 의사를 존중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국가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개인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장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이 경미한 범죄 혹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상의 대상사건에는 ‘상습범 또는 재범이 우려되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될만한 것임에도 기소유예로 처리하고 있고, 가정보호사건 처리의 경우 불처분 비율이 높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상담위탁 처분 위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분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³⁴. 일례로 한 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석 결과를 보면 칼, 가위, 도끼 등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25.5%에 달했으며³⁵,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5개월간 상담을 받던 가해자가 상담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³⁶.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하는 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에도 법원에서 부부상담을 명령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만나도록 명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³⁷.

3.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등지원과 정보인권 침해

- (3)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복지수혜자로만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복지 행정 업무처리와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폭력 범

³⁴ 지난 3년간(2013-2015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가정폭력사범 31,153명 중 11,947명(38.3%)이 불처분 됨. 보호처분을 받은 18,218명 중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경우가 31.4%(5,71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봉사·수감명령 처분이 16%(2,920명)를 차지한 반면, 접근행위제한(전기통신이용포함)과 친권행사제한 처분은 각각 1.61%(293명), 0.02%(3명)에 그침 ; 법원행정처 2014-2016 사법연감.

³⁵ 연합뉴스, 2012.4.10.

³⁶ 노컷뉴스, 2016.6.7.

³⁷ [관련사례1] 결혼생활 14년동안 가해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흉기협박 등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은 쉼터로 피신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임에도 10회기의 부부상담명령을 내림. 이런 상황에서 피해여성은 “하루만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 지내면 이혼해주겠다”는 가해남편의 말에 집으로 찾아갔고 그날 새벽(2013.5.4) 가해자에게 목을 졸려 살해됨

[관련사례2] 2015년 12월 7일, 자녀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찾아온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가해자에 의해 납치되어 임신 4개월 중인 피해여성과 6세 자녀가 살해됨.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전산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³⁸에 집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있다 해도 가해자가 점유·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출의 위험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고, 비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³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과 부실관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⁴⁰에서 정부는 정보활용범위 확대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등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9. 여성, 아동 인신매매

(질의목록 10)

1. 아동

- 1) 대검찰청이 발행한 <2016 검찰연감>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총 195건의 약취·유인범죄에서 15세 이하 피해자 사건은 49.74%, 20세 이하 피해자 사건까지 더하면 68%에 이르렀고, 총 336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위반죄의 경우에도 15세 이하 피해자 사건이 45.24%, 20세 이하 피해자 사건까지 더하면 65.78%였다. 인신매매·성매매 사건에서 낮은 연령의 피해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이다.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20세 초과	미상	소계	계

³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시스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신청, 자산조사, 지원여부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1만6천개 사회복지 및 보육 시설이 연결되어 1,200만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기준 행복e음에 접속하는 공무원은 연간 약 23만명, 월 평균 약 2만5000명 내외로 추산됨. '행복e음'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연동되어 전 부처(22개) 및 산하기관(52개)이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³⁹ 수급자는 의료급여증만 가져가면 되지만, 비수급자는 노출의 위험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진료를 받게 되어 1회당 4~5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오히려 국가적 예산의 낭비라 볼 수 있으며, 의료비가 부족한 보호시설에서는 치료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⁴⁰ '행복e음'의 개인정보 불법접근 및 열람 의심사례는 총 10,402건(2012-2014.9)에 달하며, 최근 4년간(2012-2015)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열람(2,056건)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치에 있어 81.1%가 서면·구두 경고에 그침 ; 2014, 2016 국정감사 자료.

약취와 유인	남	15 (7.69%)	17 (8.72%)	3 (1.54%)	6 (3.08%)	16 (8.21%)	-	57 (29.23%)	195 (100.0%)
	여	19 (9.74%)	22 (11.28%)	21 (10.77%)	29 (14.87%)	41 (21.03%)	-	132 (67.69%)	
	미상	6 (3.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성매수등)	남	-	-	2 (0.60%)	2 (0.60%)	2 (0.60%)	17 (5.06%)	23 (6.85%)	336 (100.0%)
	여	-	7 (2.08%)	143 (42.56%)	67 (19.94%)	-	-	217 (64.58%)	
	미상	1133.63%)							

2)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⁴¹에서는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중 68명(66%)이 16세 이하(만 나이 아님)로 나타났고, 성매매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1.5%의 아동 중 63.6%가 만 13세~14세였다(다만 조사자는 해당 실태조사에 응한 표본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피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집단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는바, 성매매로 유입된 저연령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2006년 1,745명에서 2012년 4,457명으로 2.55배 증가했는데, 이들 청소년의 78%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⁴²

3) 2016년 미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보고서(한국편)에서도 “한국아동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와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하고, 일부 가출소녀들은 거처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내몰리고 있다.”⁴³고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성매매 접근성이 높아진 현실에서, 아동매매·성매매에 관련되는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4)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료수집은

41 정현미 외 6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2 뉴스포스트('16.11.11.) <청소년 성매매 사각지대, '위험한 채팅앱 찾는 아이들'>

4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 June 2016, U.S. Department of state, 228-231.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3-4차 권고사항에서 ‘대한민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음을 우려하며, 자료수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체계마련을 촉구’⁴⁴한 바 있음에도 여전한 현실이다.

2.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 1) (UN 질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에서 지원(2009-2016)했던 피해자 고소·고발 건은 대략 80-85건(피해여성 약121명)이며, 인신매매로 기소 및 유죄판결된 건은 0건이다. 성매매알선, 성추행, 성폭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는 10여 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 2) 외국인지원시설에서 지원한 건수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성매매알선 건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단6,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6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4 등. 인신매매(협약 포함)로 고소를 했을지라도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가 되거나, 경찰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경찰이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신매매는 혐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지원 이외 의료지원, 심리치유지원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3) 위의 기술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불법 체류 상태인 성매매피해여성 모두에 대해 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여성이 신고하거나 고소·고발을 해야만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합법적 체류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여성이 고소·고발할 경우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소제기 시효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피해자이지만 미등록 체류이고 고소, 고발 의지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은 전무하고, 출입국에 단속되었을 경우 신병인계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원시설의 실무자가 여가부의 담당자와 미등록 체류 피해자(고소고발의지가 없는)는 지원할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일시보호해제에 대한 것은 피해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을 경우, 소장을 가지고가는 경우에만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
- 4)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상담이 필요한데 소장이 없으니 상담은 보호소에서 이뤄져야한다. 그 과정동안 보호소에서 지내는 여성들은 감옥 같은 공간이 주는 불안감은 물론, 업주 등 가해자들의 자유로운 방문으로 인해 각종 회유와 위협 등으로 소송의 의지는 꺾이고 본인의 피해를 제기하기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지원시설의 사례 중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경찰이 피의자로 인식한 피해자, 미등록 체류 피해자(성매매 강요로 인해 사업장이탈) 또는 출입국 단속이나 점검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금된 피해자들의 보

호소 내 상담사례는 다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뉴스, 기사 등에 실리지 않아 자료가 없음에 유감이다.

- 5) 이 보고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지원시설”은 위의 73번 정부의 답변 중 언급된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포함)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을 의미하고 전국 1개소이다. ‘외국인지원시설’에서; 2009년부터 E-7비자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G-1비자(기간이 일관되지 않고 무작위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의 기간)를 받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연장할 시 체류자격 외 활동도 함께 신청·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비싼 수입인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수수료관련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외국인지원시설의 사례 중 G-1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체류자격 변경 수입인지수수료는 10만원, 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3만원, G-1비자연장을 위한 수입인지수수료는 6만원, 체류자격외 활동을 위한 수입인지수수료는 12만원으로 나와있다. 즉, 취업을 위해 G-1비자연장과 체류자격외 활동을 위한 출입국등록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신매매피해 여부를 떠나 미등록체류자와 비자의 소기 목적과 상이한 체류자격 외 활동자들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신병인계하여 강제퇴거명령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54조2(강제퇴거의대상자) ; 「 법 제46조제1항제1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신매매의 피해사실을 떠나 법령 그대로만 해석하여 강제 퇴거명령을 강행하고 있다.
- 6) 한국의 여성부에서는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구 하였다. 그러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미등록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인 부분이다. 한국의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는 출입국관리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출입국관리소 중앙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지원단체가 있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여성인신매매의 지원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오기 힘든 성매매인신매매인 경우 정부와 민관이 협동하여 피해여성들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말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신매매의 가해자들을 처벌 할 수 있다.

10. 난민신청인 추방, 귀환, 송환

(질의목록 11)

1. 법적 문제

- 1) 대한민국정부는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을 결정할 때 협약 제3조의 요건들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⁴⁵ 정부보고서대로 2013. 7. 1.부터 시행한 난

⁴⁵ CAT Committee 2006년도 최종권고 12.항

민협약의 이행법률인 난민법에 CAT의 개념정의 일부⁴⁶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에 난민법에 따른 비호신청자들의 난민신청 심사시 CAT의 개념을 재량적, 보충적으로 행정당국이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입국시, 퇴거결정시와 같은 실제 추방, 귀환 또는 송환 절차단계에 고문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지 않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의 부존재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2. 정책/제도/법집행/관행의 문제

- 1)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비호신청의 경우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부결정이 날 경우 송환대기실이란 법적 근거 없는 비인도적 수용시설에 보호되어 장기간 소송을 거치거나, 항공사의 압력 및 수용시설에서의 고통으로 귀환을 스스로 강제당하는 위험이 있으나, 정부가 만든 시행령의 심사기준에는 고문 등의 위험을 받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식적인 심사를 받지 않고 송환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고, 그 밖에 'Manifestly Unfounded'를 해석하는 실제 집행도 자의적⁴⁷이어서 실제로 절반 정도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정식심사기회를 받지 못하고 송환된다.

<표> 출입국향 난민신청 통계(2013. 7. 1.~ 2015. 12. 31.)⁴⁸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조공항				울산			
	신 청	허 용	거 부	pend	신 청	허 용	거 부	pend	신 청	허 용	거 부	pend	신 청	허 용	거 부	Pend
13	25	16	10	0									1	0	1	0
14	71	26	45	0	70	26	44	0								
15	393	284	109	0	6	2	4	0	1	1	0	0				

- 2) 비호신청을 한 외국인들에 대하여도, 출입국관계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체류기간의 도과, 위조여권 소지, 밀입국, 심사인위조)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상의 claim에 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한 후 법관의 심

⁴⁶ The Refugee Act Article 3 (1) <http://www.refworld.org/docid/4fd5cd5a2.html>

⁴⁷ UNHCR's Comments on the Draft Presidential Decree and Regulations to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26 March 2013) <http://www.refworld.org/docid/54100f8f4.html>

⁴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소송중 공개자료

사 없이 외국인을 구금⁴⁹하는데, 구금의 종기가 없어⁵⁰, 외국인에게 심사를 포기하고 스스로 귀국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또한 퇴거결정 및 집행은 출입국공무원이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포섭하면 고문 등의 위험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자의적인 퇴거집행이 가능하다⁵¹.

- 3) 한편 위에 더하여, 비호신청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경위가 수긍되는 경우 난민협약 제31조에 따라 그 벌을 면제해야 함에도 초청장 작성, 비자신청서류 작성과정의 일부 위법을 이유로 자국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도착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기계적으로 형사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처벌하여 강제송환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3. 구체적 사례

- 1) 실제로 2-1)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유사하게 2015. 11.말부터 시리아 국정 성인남성이 공항에서 비호신청을 할 경우 자의적으로 Manifestly Unfounded로 간주하여 입국을 불허하여 송환을 지시하였고, 정책변화사실을 몰랐던 28명의 시리아 남성들이 약8개월간 공항 송환대 기실에 구금되어 ICCPR에서 interim measure⁵²를 받고,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야 입국이 허가된 사례가 있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다.⁵³
- 2) 또한 2-2)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2012. 3. 22. 송환하여 실종되었고⁵⁴, 최근 2016. 11. 23.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 난민에 대해 난민이의신청기각통지를 받는 자리에서 구금 후 곧장 공항으로 이송하여 송환하려다가 인권단체들의 개입으로 송환이 겨우 중단되었으나 구

⁴⁹ 강제퇴거명령은 난민신청자에게 언제든지 내릴 수 있고 퇴거집행만 하지 않으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출입국당국 및 현행 법원의 해석임.

⁵⁰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3

⁵¹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2 (4)
http://elaw.klri.re.kr/kor_mobile/viewer.do?hseq=39669&type=sogan&key=9

⁵² Ibrahim Salama Director Human Rights Treaties Division (19 Feb 2016), REF: G/SO 215/51 KOR(131) 2735/2016

⁵³ CNN, Syrian refugees stuck in limbo at Seoul airport(2nd June 2016)
<http://edition.cnn.com/2016/06/01/asia/south-korea-airport-syrians/>

⁵⁴ 유엔 강제송환실무그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정부에 서한을 보냄

체적 경위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⁵⁵

- 3) 2-3)과 관련하여 현재 보고서 작성시점에서 초청장 작성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16명의 시리아 국적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가 기소유예한 사건⁵⁶이 있는가 하면, 8명의 시리아 국적자를 관할에 따라 이첩하였으나⁵⁷, 그중 확인된 사건 중 최소 2건에 대해 벌금500만원씩을 구형하여 기소하였고, 2명의 부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200만원씩을 구형하여 기소⁵⁸하였는바, 얼마나 많은 유사 사건에서 난민들에 대한 형사처벌되어 강제송환에 기여하였는지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11. 추방, 귀환, 본국송환 거부 및 외교적 보장

(질의목록 12)

1. 인도적 지위를 얻은 883명의 수는 2006년에서 2015년 10년 동안의 통계이다. 2013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 6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539명으로 급증했지만 이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인도적체류허가가 부여된 것이었다. 2015년에는 5711명의 난민신청자 중 194명만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5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124명 중 62명은 관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에 대한 권리 및 처우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⁵⁹
2.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신청절차가 없으며, 심사여부 자체가 법무부 재량이다. 이뿐만 아니라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여부도 법무부의 전적인 재량에 달려 있다.⁶⁰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 허가만 받을 수 있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가족결합권 등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⁶¹
3.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⁵⁵ 한국의 NGO 난민인권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조력중

⁵⁶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58331

⁵⁷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1대 2016-2575

⁵⁸ 인천지검 2016형제113558

⁵⁹ 피난처, 2015,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14쪽

⁶⁰ 난민법, 제1장 제2조 제3항, 제4장 제2절 제39항

⁶¹ 피난처, 2015,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16쪽

- 1) 인도적 지위를 얻은 883명의 수는 2006년에서 2015년 10년 동안의 통계이다. 2013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 6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539명으로 급증했지만 이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인도적체류허가가 부여된 것이었다. 2015년에는 5711명의 난민신청자 중 194명만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5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124명 중 62명은 관할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에 대한 권리 및 처우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⁶²
- 2)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신청절차가 없으며, 심사여부 자체가 법무부 재량이다. 이뿐만 아니라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여부도 법무부의 전적인 재량에 달려 있다.⁶³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 허가만 받을 수 있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가족결합권 등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⁶⁴

1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범죄의 역외 관할권

(질의목록 14)

1. 정부는 형법조항에 따라 내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외국에서 행해진 내국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처벌된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더욱이 형법조항 및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죄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2선택의정서’)가 규정하는 모든 범죄를 포섭하지 못한다. 예컨대, 「제2선택의정서」가 정하는 ‘아동음란물’은 만화 등 가상현실에서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⁶⁵
3. 또한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절차는 법무부가 주관부서로서 진행하지만 공식

⁶² 피난처, 2015,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14쪽

⁶³ 난민법, 제1장 제2조 제3항, 제4장 제2절 제39항

⁶⁴ 피난처, 2015,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 16쪽

⁶⁵ 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가27 결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적인 절차는 외교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결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터폴에 의한 강제송환이 더 많이 활용되는데,⁶⁶ 「범죄인인도법」 상 인터폴과의 관계 등 근거규정은 부재하다.⁶⁷

13. 대용감방

(질의목록 18)

1. 과밀수용

- 1) 정부는 법무부 훈령 개정으로 수용자 1인당 면적을 늘리고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등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⁶⁸ 그러나 형집행법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무부 훈령은 스스로 정한 것이므로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어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용현원)이 100%를 넘었다.⁶⁹ 폭염이 계속되던 2016년 8월, 1인당 1.72㎡ 면적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숨졌다.⁷⁰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1인당 면적이 1.06~1.59㎡ 에서 생활한 서울구치소 수형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66 2016.9.8.자 검찰청 보도자료 <아동성범죄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인도 국적 성범죄자를 독일에서 송환-> 8 September 2016 Press release <Child sex offender, there is nowhere to hide> - Indian child sex offender escapes to Germany during trial, but finally repatriated.

67 신상철·임영호(2016),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1), 139-177. Shin S., & Im, Y. (2016). The current state of transnational fugitive offenders and the methods of their repatriation: Issues and policy proposals. Journal of Korea Police Science, 56, 139-177.

68 CAT/C/KOR/3-5, para. 105

69 2015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2015년 6월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정원은 46,700명이나 수용현원은 53,990명으로 수용률이 115.6%에 이르렀다. 서울구치소(142.0%), 성동구치소(155.4%), 인천구치소(159.7%), 의정부교도소(159.6%), 대구교도소(166.9%), 대전교도소(155.6%), 광주교도소(145.1%) 등 대도시 교정시설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70 8월 19일 사망한 이모씨는 8월 17일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조사수용실에 격리됐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8월 19일 새벽 의식저하와 함께 40.5도의 고열을 앓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조사수용실은 가로 154cm, 세로 337cm에 3명이 수용되어 1명당 면적은 1.72㎡(0.52평)에 불과했으나 선풍기 등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이 없었다. 화장실 창문(폭 26cm)이 유일했으나 다른 수용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문을 닫으면 통풍이 전혀 불가능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서씨는 8월 9일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같은 크기의 조사수용실에 수용되었다가 18일 체온이 39.9도에 이르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8월 20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의 부검 결과 2명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따르면, 8월 18일과 19일의 최고기온은 각각 32.5도와 32.7도였다(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 및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들은 평소 당뇨 등 질병으로 열사병에 취약했는데 폭염과 과밀수용이 겹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것”이라고 판단했다.⁷¹

2. 대용감방

- 1) 대용감방에 배치된 여성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이 없어 여성유치인을 남성 경찰관이 감시하고 있다.⁷² 남아있는 대용감방의 경우 일자형이 아니라 감시가 용이한 부채꼴형으로 되어 있어 경찰관이 여성유치인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대용감방의 화장실은 사방이 막힌 밀폐형이 아니라 1미터 정도 높이의 미닫이문만 있는 개방형이 대부분이다.⁷³ 여성유치인들은 용변을 보는 모습과 소리, 냄새가 같은 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경찰관에게도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또한 유치실을 향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유치인보호관이 용변을 보는 여성유치인의 상반신을 감시 및 녹화할 수 있다.

14. 고문피해자 배상

(질의목록 21)

1. 고문피해자의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보장 미흡

- 1)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 고문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 및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서술한다.⁷⁴ 그러나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2011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현저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 2)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구금되어 고문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특별법의 목적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피해를 당한 피해자

⁷¹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⁷² CAT/C/KOR/3-5, para. 114. 2012. 10. 26. 경찰청이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한 자료(접수번호 1797898)에 따르면, 각 대용감방을 관할하는 전체 시도 단위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다. 여성 유치인보호관의 수는 강원청(속초) 0명, 충북청(영동) 0명, 전북청(남원) 2명, 경남청(거창) 1명이다.

⁷³ 2012. 8. 24. 경찰청이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한 자료(접수번호 1797898). 대용감방의 밀폐형과 개방형 화장실의 개수는 속초(0, 12), 영동(1, 5), 남원(0, 10), 거창(2, 11)이다.

⁷⁴ 정부보고서 Para. 146.

들에게 신속한 금전적인 “보상”⁷⁵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대법원은 위와 같은 보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고문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⁷⁶ 이처럼 과거 군사정권 시절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이미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사례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⁷⁷

- 3) 또한 대법원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판결하면서도, 긴급조치의 발령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긴급조치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처벌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모순적인 판결일 내놓기도 하였다.⁷⁸ 그리고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오래 전에 있었던 경우에 통화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으로 삭감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하였다.⁷⁹
- 4) 이처럼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들에게 적절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한 고문범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15. 고문신고센터

(질의목록 22)

1. 고문피해신고센터는 2010년 6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양천경찰서 경찰관 고문사건 직권조사 결과 브리핑 이후 수사기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상담과 진정이 이어지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권상담센터 내 설치되어 2010.6.28 ~ 2010.9.28 3개월 간 운영됐다.⁸⁰ 한국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해당 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가 총 15건, 이중 진정 2건, 상담 12건, 민원 및 신고 1건이라고 언급했다. 고문신고센터가 소속한 인권위 내 인권상담센터는 매년 인권상담사례집을 통해 매년 접수된 상담, 민원, 진정 사건에 대한 통계 수치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정보 및 후속조치를 발표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문피해신고

⁷⁵ 보상은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특별히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에게 그 소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반면에,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과 다르다.

⁷⁶ 대표적인 판결로, 대법원 2015.1.22. 선고 2012 다 204365 전원합의체판결.

⁷⁷ 정은주, 「대법원, 치졸한 너무나도 치졸한」, 한겨레 21 제 10005 호, 2014.4.3.

⁷⁸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 다 48824 판결.

⁷⁹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 재다 199 전원합의체판결.

⁸⁰ 인권위, 고문피해신고센터 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0.6.29)

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결과 및 통계자료는 당해년도 사례집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센터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또한 단독으로 밝혀진 바 없다. 인권위가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 발표 후 고문피해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인권위에도 경찰 등 수사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적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쇄도했다. 인권위의 브리핑 이후인 2010.6.17~2010.7.27까지 40일간 경찰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은 총 248건으로 같은 기간인 2010.5.5~6.15 진정건수 171건보다 77건이 증가했다.⁸¹

2. 2010년 인권상담사례집(2009.7.1~2010.6.30, 인권상담센터 접수된 20,562건 상담사례를 분석)과 2011년 인권상담사례집(2010.7.1~2011.6.30 인권상담센터 접수된 22,596건 상담사례를 분석)에서 밝힌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유형	2010.7 ~ 2011.6	2009.7~2010.6	2008.7~2009.6	2001.11~2011.9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기무사				
소계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장구 사용	502	560	377	3,106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501	467	298	2,507

<표>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중 수사기관 내 가혹행위 관련 통계⁸²

3. 고문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15건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인권위에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2건의 진정은 각하되었고 다른 건은 상담과 민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 고문피해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이지 않았고, 2) 위 <표>를 참고했을 때 인권상담센터에 신고 된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고문피해신고센터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후속조치 또한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16. 고문범죄 공소시효

(질의목록 23)

1. 공소시효 배제의 문제

- 1) 정부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⁸³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⁸¹ “인권위 ‘또 경찰이 고문’ 진정 2건 조사중”, 연합뉴스, 2010.7.30.

⁸²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2010년 인권상담사례집>, <2011년 인권상담사례집>에서 해당 자료 취합하였음.

⁸³ 정부보고서 Para. 135.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이 적용되는 전쟁범죄 및 집단살해죄 등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고문범죄 중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타 국내에서 공무원이 저지르는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효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2)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자행된 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과거청산을 위하여 “반인도범죄” 내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법제정에 이르지 못했다.⁸⁴ 이후 10여년 동안 반인도적 범죄 내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정지규정의 신설에 관해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17. 이주노동자 학대 진정 및 조사제도

(질의목록 25)

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 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배치 전 취업교육 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을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으로 파견되기 전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 받는 16시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기 바라며, 16시간 중 노동부 진정과 조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교육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러한 교육이 각 나라 언어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내용에 대해 노동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또는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입국 후 16시간의 교육 이후 최장 9년 8개월 기간 동안 일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 추가 교육도 이루어지지 의심된다.
- 2) 근로자는 내·외국인 모두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시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하나, 2016년 10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신고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노동부는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 사례⁸⁵가 있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⁸⁴ 2002년 5월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인도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2005년 7월 1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⁸⁵ 윤성호,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받으려다 강제출국 당해」, 오마이뉴스, 2016.10.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4305&CMPT_CD=P0001

는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보장정도를 살피기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위(하법 체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⁸⁶

- 3) 또한 근로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로감독관이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라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는 2015년 4월 20일 한국방송공사(KBS) 저녁 9시 뉴스⁸⁷에도 보도된 바 있다. 국내 근로자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러한 근로감독관들의 행태는 시정돼야 하며, 직무교육 강화뿐만이 아닌 인식개선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출석할 경우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 1) 현실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외부와 고립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장주들의 신분증 압류가 다반사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⁸⁸
- 2) 2015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⁸⁹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 665명 중 폭행을 경험한 사람은 1.1%(7명),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사람은 2.4%(16명)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한국인은 0.4%만이 폭행 상해 등을 당했다.
- 3) 2016년 7월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에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남성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수차례 밀치고 뺨을 후려쳤다. 폭행상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고 4일 후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한국인 남성은 자수를 했다.⁹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여성은 사장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 폭행사건은 2016년 7월

⁸⁶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⁸⁷ 이량,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 근로감독관 발언 파문」, KBS NEWS, 2015.04.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60545&ref=D>

⁸⁸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2014,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34쪽-43쪽

⁸⁹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⁹⁰ 손인해, 「양주역서 '마구잡이 폭행' 당한 미얀마 노동자...이유는 "반말해서"」, 포커스뉴스, 2016.07.14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1400102530024>

21일 한국방송공사(KBS) 저녁 9시 뉴스에도 보도된바 있다.⁹¹

- 4)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편견,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개입되어 내국인 노동자보다 근로관계에서 폭행의 위험성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폭행과 폭언을 당해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고 강제퇴거라는 두려움으로 신고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중국 출신 미등록이주노동자 남성은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다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사장이 이주노동자를 가해자로 신고한 일도 있었다.⁹²
- 5) 고용센터, 고용노동지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요구만이 아닌 어떠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3.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

- 1) 2013년 국가인권위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30.8%가 성희롱, 성폭행 경험이 있었고 50.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경험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발생되었을 때 55.6%가 그냥 참았고 말로 항의한 경우가 27.8%이며 농장을 그만둔 경우가 16.7%로 나타난 바 있다.⁹³ 최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실태조사(2016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공공기관 및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말을 잘못해서(68.4%)였고 그 다음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52.6%),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42.1%),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15.8%)로 나타났다.⁹⁴
- 2) 위의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자 23명중 성폭력 피해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을 한 응답자는 5명(21.7%) 불과했는데 그중에서도 3명만이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 ‘고용주의 합의’로 사업장 변경할 수 있었고 고용센터가 ‘성폭력 피해를 인정’해 사업장 변경을 허가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 2명은 모두 고용주가 합의해 주지 않아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결국 사업장의 변경은 고용주의 의사에 달려있다. 성폭력을 이유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려면 성폭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성폭력 입증은 확정판결로써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노동자가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로 다른 농장에 취업하였는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나

⁹¹ 안다영, 「폭행·폭언에 멍드는 ‘코리안 드림」, KBS News. 2016.07.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6250>

⁹²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25352, 2016가소112000 판결

⁹³ 이병렬 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194쪽

⁹⁴ 소라미 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48-87쪽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가해자인 고용주가 피해 이주여성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합의해주지 않아 피해 이주여성노동자가 합법적 노동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피해를 당하고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 3) 한국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그 입증자체가 어려운데 이주여성노동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그로인해 체류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됨으로써 이주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성폭력 상담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상담통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사유로 사업장이동 변경을 신청한 사례들이 몇 건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개되어야 한다.

4. 반인권적인 단속과정

- 1)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동 준칙은 조사과장이 단속을 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⁹⁵ 하는데,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과장의 인권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고, 피교육자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인권 감수성이 충분히 키워졌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교육내용인 단속계획,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의 세부사항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너 불법 체류자지? 아니면 말고” 식의 단속⁹⁵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2017년 2월 16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뉴스보도와 함께 게재한 는 김해시 한 식당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⁹⁶ 현장을 동영상과 함께 게재한 경남도민일보의 뉴스보도를 보면 이러한 확인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진다.
- 2) 이 동영상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조사과장이 단속을 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는 준칙에 속한 것이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 공무원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행동하였을까?’라고 질문하고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분명히 단속계획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을 들었을 것이고,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다. “최초 팀장 2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큰 목소리로 소속과 단속활동을 아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절차 모두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긴하다.
- 3) 하지만 199, 200 정부 답변을 살펴볼 때, 이들이 교육받은 적법절차는 적법하지

⁹⁵ 연합뉴스 「‘서러운 외국인 근로자’ ... 비닐하우스서 자고, 강 주변서 불일 보고」 아시아투데이 2016-07-1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712001415597>

⁹⁶ 김희곤 「식사 중 외국인 노동자 무리한 단속에 비난 쇄도」 경남도민일보 2017-02-16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0690>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무엇을 교육받았는지, 또 실제로 옆에서 선주인이 “식사나 마치고 데려가라”고 했는데도 “도주·사고 우려 등으로 긴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인권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다 하니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수갑을 채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출입국 관리법을 운운하며 인권침해 논란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문제의 식당은 출입구가 하나뿐인 곳으로 창문이 있긴 했지만 나가봤자 출입구와 맞닿는 구조였다. 식사를 마치게 한 후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설득력 있어 보였다”는 뉴스 내용을 보면 이는 더욱 자명하다. 아마도 조사과장이 설명한 단속계획⁹⁷은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는 내용뿐이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정부의 답변은 정당하지 못하다.

- 4) 더 나아가, 단속을 피해 필사적으로 창문으로 도망하다가 크게 다치는 사례들⁹⁸⁹⁹을 보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단속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 사례의 뉴스 보도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속추방 정책의 폐기 없는 안전한 단속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는 이유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인한 것이기에 단속을 통해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¹⁰⁰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

1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능과 독립성

(질의목록 26)

1. 인권위에 의한 장애인권활동가 확대행위

- 1) 2010년 12월, 장애인인권 옹호자 및 장애인당사자들은 위원장의 사임과 세 가지

⁹⁷ 정영규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뉴스창 2016-04-04
<http://www.newsw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1>

⁹⁸ 김영규 「인권침해 없는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살인”」 참세상 2016-04-08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32>

⁹⁹ 김지연 「경주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 단속 피하다 부상」 평화뉴스 2016-04-07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6>

¹⁰⁰ 정영규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뉴스창 2016-04-04
<http://www.newsw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1>

장애인 관련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위원회 건물을 평화적으로 점거하였다. 점거 도중 전기 및 난방이 끊겼고, 음식반입과 인권옹호자 활동보조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극심한 날씨와 저온의 결과로 시위 참여자 중 한 명이 폐렴에 걸려 2주 후 사망하였다.¹⁰¹ 이에 대해 장애인권단체는 진정했으나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으로 다시 위원장의 장애인권활동가 탄압이 문제가 돼 시민진정인단을 모집해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했다.¹⁰² 우동민 열사 관련 인권침해 시민진정에는 장하나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인권위법상 1년이 지난 사건은 각하대상이나¹⁰³ 시민사회의 요구로 직권조사로 받아들였으나 기각됐다.¹⁰⁴

2.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관련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

- 1) 2014년 4월 6일 윤일병이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군대는 이를 숨겼고 음식을 먹다가 의식불명이 됐다고 했다.¹⁰⁵ 하지만 그의 가족은 윤일병의 몸에 멍이 있는 것을 보고 사망 직전인 4월 6일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는 진정접수 일주일만 지난 4월 14일~15일에 나갔으나 각하했다.¹⁰⁶ 언론을 통해 인권위 조사관이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 취하를 종용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군 인권센터에 의해 윤 일병의 사망원인이 폭력임을 7월 31일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다시 했다.¹⁰⁷
- 2) 군 체계에서는 지휘관의 역할과 영향이 매우 크기에 독립적인 조사나 재판이 어렵다.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천177건 중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74.3%(875건)였다. 각하 사유로는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18.3%(160건)이었다.¹⁰⁸ 진정한 취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인권위의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¹⁰¹ A/HRC/25/55/Add.1, para.60.

¹⁰² “인권위 ‘현병철 장애인 인권침해’ 진상 조사”, 연합뉴스, 2010.8.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47110

¹⁰³ 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¹⁰⁴ 갈홍식, “인권위 유엔보고서 ‘사실왜곡’ 물의 빚어”, 참세상, 2014.3.1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3390>

¹⁰⁵ Choe Sang-hun, “Outrage Builds in South Korea in Deadly Abuse of a Soldier”, The New York Times, Aug. 6, 2014,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14/08/07/world/asia/outrage-builds-in-south-korea-over-military-abuse.html?_r=0, accessed Feb. 21, 2017.

¹⁰⁶ 최우리, 진명선, “인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었다”, 2014.8.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186.html

¹⁰⁷ 임동현, “인권위, 윤일병 구타 알고 있었음에도 ‘각하’ 결정”, 2014.8.7,
http://www.nbstv.co.kr/sub_read.html?uid=33838

¹⁰⁸ “‘유일 軍조사기관’ 인권위, 군인권 진정 75% 각하”, 연합뉴스, 2014.8.11,

- 3) 인권위가 군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최근 군 장성출신이 많아진 것도 한 몫을 한다.¹⁰⁹ 최근 인권위 내에 군인권옹호관을 두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지만 군인권예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문위원이나 인권위원으로 있는 한 구제가 어려울 것이다.

3. 구금시설에서의 여성수감자에 대한 모욕행위

- 1) 2016년 4월 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희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알몸검신이라는 폭력을 당했다. 서울구치소는 14일간의 노역에 불필요한 알몸검신을 요구했다. 그는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서울구치소는 입소단계만이 아니라 중간에 법원이나 검찰 조사를 갔다가 들어올 때에도 알몸검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 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¹¹⁰
- 2) 이와 관련 5월 9일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1년 만에 돌아온 것은 기각이었다.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가운을 입으라고 안내를 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회장의 진술은 무시한 채 기각 판결을 내렸다.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탈의실임을 고려했을 때 인권위는 수감 중인 여성들의 진술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조사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으며 가해자인 교도관의 주장만 들었다.
- 3) 2014년 노역장 유치로 입소한 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로 결정했던 인권위의 입장과 다르다.¹¹¹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관 인력, 고문 및 학대행위에 대한 관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경청,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 구금시설의 알몸검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09/0701000000AKR20140809054351004.HTML?template=2087>

¹⁰⁹ “헌병철號’ 인권위에 軍출신 정책자문위원 급증”, 연합뉴스, 2013.7.7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7/06/0702000000AKR20130706040200004.HTML>.

¹¹⁰ 이혜리, “서울구치소, 노역간 사람에게 속옷 강제로 벗겨” 인권위에 진정”, 2016.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91600001&code=940100

¹¹¹ 결정문 14진정0158100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4.11.25.

19. 고문피해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질의목록 27)

1. 적절한 배상 (Para 146, 147)

- 1) <헌법>과 개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 및 배상청구권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따라 보상 및 배상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 제기 시효가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대폭 줄었다.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재심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이 소 제기 시효에 해당했다.¹¹² 기존 판례가 뚜렷한 법리 없이 변경됨으로 인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과거 폭력의 주체인 국가가 현재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목도해야 했다.¹¹³ 이는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으며, 과거의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 2) 또한 정부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지급된 피해자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또는 피의자 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개별의 판결이라도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주도할 일이며,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2.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 1)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및 신체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도 제도적으로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0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광주트라우마센터에 국가폭력피해자를 위한 치유재활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를 최초 지원하였다. 그러나 해당 센터의 트라우마 치유서비스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예산지원을 중단했다.¹¹⁴ 2017년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는 민간에 보고된 바 없다.

3. 스마일센터 (Para 148)

- 1) ‘스마일센터’는 일반 형사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한국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고문 및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보호 노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재활치유에 지원 했다는 기록은 민간에 알려진바 없다.¹¹⁵

¹¹² 2013다201844 손해배상(기) (사)상고기각

¹¹³ <소 제기 시효 변경>에 대한 자세한 반박 보고는 (재)진실의힘이 CAT에 별도로 제출 예정.

¹¹⁴ “광주시, 국비 끊긴 트라우마센터 출연기관 전환 추진”, 2016.6.16., 연합뉴스

¹¹⁵ 2017.2.22 광주트라우마 센터 제공

4. 군 내부 설치된 자체적 심리치유기구 현황 (Para 149~151)

- 1)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처한 특수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 북한과 발생하는 교전행위 또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 생존군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나 치유 프로그램의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같이 예방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치료 지침 등이 있는 바는 사실이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¹¹⁶
- 2)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등에서 다수의 군인이 목숨을 잃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생존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없다. 특히 2015.8.4 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발목이 절단 당하는 부상을 입은 2인의 병사는 관련 법 제정이 부실하여 신체재활치료마저도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¹¹⁷ 사고피해자의 희생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국민 성금을 모금한 해당 부내 또한 해당 모금액으로 발목 형태의 동상을 설치했다.¹¹⁸ 피해병사에 대한 심리적 재외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인에게 모은 성금을 전시적으로 소비한 국방부 행정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질의목록 28)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 정부보고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에 따른 엄격한 처벌의 기대효과를 제시했으나¹¹⁹, 2012년 이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집행유예와 재산형 선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¹²⁰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도 여전히 심각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의 경중 및 집행유예 결정에 주요한 요소로 기능¹²¹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법기관이 형사합의를 중용하거나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심문하고 있지만,

¹¹⁶ 2017.2.20 광주트라우마 센터 제공

¹¹⁷ “애국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2015.11.27., 한겨레

¹¹⁸ “‘북 지뢰도발’로 잃은 다리, ‘평화의 발’로 태어났다”, 2015.12.23., 연합뉴스

¹¹⁹ 정부보고서, 제154항.

¹²⁰ 정부보고서 부록, 표 5 성폭력 사건 제1심 판결현황.

¹²¹ 성범죄 양형기준 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이며,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임.

현행법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¹²². 특히 사건과 무관한 성(性)이력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인지 수사 및 기소 결정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의도와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다¹²³. 한국은 ‘성폭력은 허위신고, 무고가 많다’는 왜곡된 통념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로, 친고죄 폐지를 시점으로 전국의 여러 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 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기도 했다¹²⁴. 성폭력사건의 40.3%가 불기소되고, 불기소 이유의 38%가 최협의설과 증거부족 등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는 상황¹²⁵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¹²⁶에 따라 성폭력사건의 상당수가 무고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가 무고로 몰릴 위험이 높지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관할기관이 검찰청이기 때문에 검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고 수사 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형사절차상에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규정을 두는 등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21. 고문으로 인한 진술

(질의목록 29)

1. 수사기관의 ‘밤샘 조사’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 1) 그 예로는 인턴직원 특혜채용 관련 최경환 의원(2017. 3. 3. 21:10 - 3. 4. 4:15)¹²⁷, 우병우 전 민정수석(2017. 2. 19. 9:53 - 2. 20. 새벽, 19시간 정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2017. 1. 12. 9:30 - 1. 13. 아침) 등 이 있다.

¹²² [관련사례] 2011년 6월 1일, 성폭력 피해여성이 재판에서 증언을 한 다음 날 자살함. 피해자는 유서에서 “판사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 밝힘.

¹²³ [관련사례] 2010년 피해자 A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방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피해를 입고 고소했으나,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검사에 의해 무고로인지 되어 무고죄로 기소됨. 검사는 가해자가 합의를 재차 요구한 사실, 소송과정의 힘겨움에 피해자가 합의금도 받지 않은 채 고소취하를 한 점은 간과한 채,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근거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판단함. 검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4시간에 걸쳐 대질신문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고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음. 피해자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3심에 걸쳐 재판을 받아야 했고, 재판 결과 무고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음.

¹²⁴ 대한일보, 2014.5.12.

¹²⁵ 법무부, 2016 국정감사 자료.

¹²⁶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¹²⁷ 경기일보 2017. 3. 4.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20820>>

2.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 재심 사건에서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이 밝혀졌다.

1)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1999. 2. 6. 범행 발생했으며, 각 징역 3-6년 선고 받은 후 복역을 했다. 2015년에 재심을 시작하여 2016. 11. 4. 무죄가 확정¹²⁸되었다.

2)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 8. 10.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15세 소년을 용의자로 수사하여 1심 징역 15년 선고를 하였고, 2심에서 범행 자백 후 징역 10년 선고를 하였으며, 대법원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2003년 진범의 제보가 있는 후, 2015년 재심이 시작되어, 2016. 11. 17. 무죄가 선고¹²⁹되었다.

3)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등 ‘고문으로 인한 진술’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정부는 재심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재판부에 따라 재심 여부가 결정되는 등 ‘고문으로 인한 진술’로 인한 수사과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5) 2017. 3. 9.-10.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국선번호인이 그 피의자의 구속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번호’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국선번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¹³⁰, 제도적 개선 방안 추진계획은 아직 없다.

6) 정부는 ‘고문으로 인한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22. 서면의 증거능력

(질의목록 30)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NAP(2012-2016)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으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부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인

¹²⁸ 연합뉴스 2016. 11. 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7/0200000000AKR20161117079200055>. HTML?input=1195m>

¹²⁹ YTN 2017. 2. 23.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31515049902>

¹³⁰ 법률저널 2017. 3. 10.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42>>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1)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2)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3)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을 추진했다

- 1)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 10.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플리바게닝 면책제도 같은 선진수사제도를 도입해야”하며,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¹³¹, 2016. 4. 26.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검찰 및 외부 전문가의 플리바게닝 도입 여부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다¹³².
- 2)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2009. 1. 7. 플리바게닝제도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¹³³, 법무부가 2011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거래대상이 되는 게 부적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임기만료로 2012. 5. 자동폐기되었다¹³⁴.

23. 구금시설 사망 조사

(질의목록 32)

¹³¹ 서울경제 2016. 10. 13. <<http://www.sedaily.com/NewsView/1L2OFUX8QS>>

¹³² 연합뉴스 2016. 4. 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5/0200000000AKR20160425_132400004.HTML?input=1195m>

¹³³ 한겨레 2009. 1. 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1912.html>

¹³⁴ YTN 2016. 9. 24.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40611086196>

1. 교정시설

- 1)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한 사람은 총 98명, 병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83명이며 이 중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¹³⁵ 하지만 질의 31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금시설 외부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7월까지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수용자들이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렀다. 벌금을 내지 못하고 일당 5만원이 책정되는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경우도 9명이었다. 이는 교정시설 측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수용자를 사실상 방치하다가 사망에 임박해서야 형(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심사결정을 하기 전에 결국 사망하거나 그마저도 불허하여 교정시설 내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측된다.¹³⁶
- 2) 또한 지난 10년간 자살로 인해 사망한 재소자는 줄어드는 반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재소자 수는 늘어난 점¹³⁷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와 사망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출입국 외국인보호소

- 1)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보호소(실)에서 발생한 2건의 자살 및 돌연사 사건 중 하나인 2012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알콜금 단증후군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현재 당일 근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¹³⁸
- 2) 하지만, 숨진 몽골인 아마라 씨는 2006년 한국에 들어와 이삿짐센터 등에서 일하다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2012년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뒤 사흘

¹³⁵ CAT/C/KOR/3-5, para. 167, 168

¹³⁶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

¹³⁷ ‘10년간 교정시설서 자살감소, 질병사망 증가, 2016. 10. 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27900004.HTML>

(교정시설내)	2006	2016
자살자수	17	4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	16	24

¹³⁸ CAT/C/KOR/3-5, para. 169

만에 숨졌다.¹³⁹ 그는 수용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소리를 지르고 철창을 두드리는 등 계속해서 증세를 표현했으나, 보호소 측은 식사시간에 진정제만을 주었을 뿐 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1인 독거실로 이감시켰다. 그는 그날 새벽 독거실에서 사망하였다.¹⁴⁰

- 3) 화성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는 현재까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2007년 10명이 사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이후에도 국내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처우 문제, 단속과 구금에 대한 법 제도는 개선된 것이 없다.

24. 군 내 자살원인 규명 및 예방훈련

(질의목록 33)

1. 부당한 대우, 학대 및 그에 대한 조치

- 1) **실태:** 전체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통계는 없으나 보고되어 정식 조치가 이뤄진 수치를 통해 추정컨대 매우 높은 빈도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징계현황을 보면 약 5,000건 이상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¹ 특히 이 수치는 ‘정식 조치’된 경우이므로 은폐, 미처 벌건을 고려할 때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육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¹⁴² 2014년 4월 한달 만 해도 3,900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 2) **처벌:** 최근 5년간 군대 내의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아래 표 참조), 실형 선고를 받은 가해자는 55명으로 전체 사건의 약 1.4%에 불과하고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까지 합쳐도 555건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여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¹⁴³

군대 내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
2012	649	20	83

¹³⁹ ‘구금 몽골인 죽음에 사과해야’ - 손배청구, 연합뉴스, 2012. 10.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31/0200000000AKR20121031151700372.HTML>

¹⁴⁰ ‘억울한 죽음들-화성외국인보호소가 방치한 어느 이주노동자의 죽음’ 장서연 변호사

<http://withgonggam.tistory.com/971>

¹⁴¹ “사람잡는 軍, 상습 폭행·가혹행위 매년 5~6천 건”. 중앙일보, 11 SEP 2014. <https://goo.gl/BmTbIP>

¹⁴² 미국 국무부 인권현황 보고서 2014: 대한민국 편(2014 Human Rights Report)

¹⁴³ 데일리경제, 2016. 9. 13.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15>

2013	569	31	40
2014	947	53	65
2015	800	75	88
2016 (6월 30일 까지)	349	37	40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 3) 특히 군 간부에 의해 행해지는 가혹행위의 경우에,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부사관급 이상 군 간부 491명이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실형선고는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는 등¹⁴⁴ 군이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처리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자살

- 1) **실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 이래 줄곧 군대 내 사망 원인 1위(60% 이상)를 차지하고 있다.¹⁴⁵ 그럼에도 국방부는 줄기차게 민간의 자살률과 비교하며 군대 내 자살 문제가 오히려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OECD가 2011년 지적한 대로 한국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고, 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¹⁴⁶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므로 자살예방 정책 시행에 방해가 될 뿐이다. 게다가 비교 대상 역시 유사 집단인 20대~30대 남성이 아닌, 국민 전체임으로 비교의 전제 역시 잘못된 것이다.
- 2) **처벌:** 전반적으로는 사망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가 여전히 우세하다. 여전히 약 200여 유가족이 군대 내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¹⁴⁷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단 118명의 간부만이 자살 사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으며(57.5% 정도) 그마저도 90%는

¹⁴⁴ 뉴스원, 2014. 8. 11. <http://news1.kr/articles/?1810421>

¹⁴⁵ From National Statistics Service of the ROK (<https://goo.gl/Hw47u2>). After a drastic decrease in 2014 (when the terrible death of late Private First Class Yoon occurred, the suicide cases seem to be tied up around 50s; however, notably, the proportion of suicide in the military personnel’s death remains more than half.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um
S*	77	80	75	81	82	97	72	79	67	57	54	821
DT**	121	134	113	129	128	143	111	117	101	93	81	1,271
%***	63.6	59.7	66.4	62.8	64.1	67.8	64.9	67.5	66.3	61.3	66.7	64.6

*S: suicide **DT: death toll ***%: proportion of suicide out of death toll in the military personnel

¹⁴⁶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verview, (<https://goo.gl/F0k1NM>)

¹⁴⁷ “군대내 사고 숨기고 보는 군, 원인은 무조건 ‘관심병’ 탓.” 주간경향 1214호. 8 JUL 2014. <https://goo.gl/FLoR8t>

경징계를 받았다.¹⁴⁸ 게다가 2013년 기준 최근 5년 간 자살사고 징계의 대부분은 계선조직의 부사관(41%)이 ‘대신’ 떠맡고 있으며, 영관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한 징계는 단 8건에 불과했다.¹⁴⁹

3. 심리적, 보건 서비스 유무

- 1) **관심병사:** 국방부는 2005년 ‘관심병사’라 불리는 군대 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결손가정 출신이거나 심지어 경제적 빈곤가정 출신조차도 관심병사로 지정하였고, 실제로는 비전문가인 소대장 등 초급지휘관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관심병사 판단이 이루어져 온 것이 확인되었다¹⁵⁰. 더욱 큰 문제는 관심병사 지정이 해당 병사의 군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초래¹⁵¹하고, 실제 관심병사 관리의 유일한 수단인 상담조차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 조치에 그쳐졌다는 점이다. 부적응 병사의 45.5%는 병영생활 전문상담인에 의한 면담 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²
- 2) **비전캠프, 그린캠프:** 비전캠프는 복무 부적응자와 사고 우려자에 대한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그린캠프는 자살 및 사고 우려자의 적응 유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부적응집단의 12.3%만이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휘관들이 부적응집단의 병사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더라도 캠프에 참여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⁵³
- 3) **군옴브즈만(군인권보호관)도입의 권고:** 2014. 10. 국회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39개 과제를 권고하였다. 이 중에는 군 내부의 인권침해나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기구인 군옴브즈만제도(ombudsperson)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인하여 도입이 무산되었다¹⁵⁴.

25. 독방구금 및 징계구금, 국가인권위 고문신고센터 진정

(질의목록 34)

¹⁴⁸ “‘병사 자살’ 책임 안 지는 군 간부들”. 세계일보, 15 DEC 2014, <https://goo.gl/WuXnY9>

¹⁴⁹ “軍 잇따른 자살사고 해당간부 처벌은 ‘숨방망이’”. 중앙일보, 29 OCT 2013, <https://goo.gl/yTz9G4>

¹⁵⁰ 한겨레, 2014. 6. 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3945.html

¹⁵¹ 중앙일보, 2016. 6. 2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11499

¹⁵² 2012. 11.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제77면

¹⁵³ 2012. 11.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제80면

¹⁵⁴ 한겨레, 2016. 8. 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672.html

1. 보호장비와 징벌

- 1) 정부는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비의 징벌수단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률에 징벌사유를 명시했다고 밝혔다.¹⁵⁵ 정부는 보호장비의 연도별 사용건수 통계¹⁵⁶만 제시할 뿐 보호장비를 남용하는 관행은 감추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해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수갑(Handcuffs)과 머리보호장비(Head protective equipments) 등 동시에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등 보호장비가 여전히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⁵⁷ 정부는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전적으로 교도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¹⁵⁸ 보호장비의 사용은 도주나 폭행, 손괴, 자해 등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그 성질상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수용자에게 일정 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그러한 위험성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감소한다. 그럼에도 보호장비를 장기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보호장비의 사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 2) 정부는 징벌집행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치 위주 징벌의 종류에 근로봉사 등 9종을 추가하여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¹⁵⁹ 그러나 징벌의 대부분이 가장 가혹한 징벌인 금치(solitary confinement)로 집행되고 있으며 그 기간도 길다.¹⁶⁰ 그 원인은 대부분의 징벌대상행위에 금치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에 있다. 동조 제5호에 따라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금치 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징벌대상행위에는 금

¹⁵⁵ CAT/C/KOR/3-5, paras. 180-181; CCPR/C/KOR/2005/3, paras. 170-177; CCPR/C/KOR/4, para. 121

¹⁵⁶ CAT/C/KOR/3-5, para. 183

¹⁵⁷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2013년 1월~8월 전국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3318건 중 1204건(36.3%)에 달했다. 심지어는 7일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24건이었다.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건수는 938건(28.3%)에 이르렀다.

¹⁵⁸ 형집행법 제99조는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제1항),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호장비의 사유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교도관이므로 실효성이 없다.

¹⁵⁹ CAT/C/KOR/3-5, paras. 180-181; CCPR/C/KOR/4, para. 121

¹⁶⁰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2013년 1월~7월 전체 징벌 8393건 중 금치가 7388건(88.0%)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전체 금치 건수 중 20일 초과 30일 이하의 장기 금치 건수가 2308건(31.2%)에 이르렀다.

치 징벌을 가할 수 있다. 한편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¹⁶¹에 포함된 외부 위원도 교도소 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징벌결정 절차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2. 고문신고센터

- 1)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신고센터에 제기된 진정 중 구금시설에서의 보호장비 사용 및 징벌집행과 관련된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¹⁶²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고문신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2건이 각하 처리되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이루어 졌다.¹⁶³
- 2)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부터 구금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및 징벌집행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는데 그 진정사건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조사징벌·보호장비’관련한 진정은 총 1026건이었으며, 그 중 인용되어 종결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¹⁶⁴
- 3) 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고문신고센터에 의 진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문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건에 대하여 조사가 개시된 바 있는 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26. 2008 촛불집회 체포 및 물리력 사용

(질의목록 35)

1.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전체 입건자는 1591명에 달했다.¹⁶⁵ 이 중 검찰은 46명을 구속기소, 170명을 불구속기소, 1,061명을 약식기소 하였고 211명을 불기소 하였다. 구속기소 된 4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7명에 대해서는 집

¹⁶¹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부소장)가 맡고, 위원은 내부 위원(해당 기관의 과장)과 외부위원(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모두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¹⁶² CAT/C/KOR/3-5, para. 185

¹⁶³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0면

¹⁶⁴ CAT/C/KOR/3-5, 부록 [표 26]

¹⁶⁵ 정은주, “7년이나 재판에 시달린 2008년의 촛불들”, 한겨레신문, 2016.12.21

행유예가, 25명에 대해서는 100만원~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¹⁶⁶

2. 정부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참여자의 폭력 행위를 근거로 시위 전체를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전체 집회 참여자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마이나 키 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참가자들의 권리는 다른 이들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¹⁶⁷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은 차벽 설치와 같은 경찰의 과도한 사전대응이 집회 참여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흥분하게 만들어 시위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⁶⁸
3.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폭행 피해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사건 총 24건 중 검찰은 단지 2건만을 기소하였고,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¹⁶⁹ 나머지 22건 중 18건은 구체적인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었다고 설명하나, 이는 경찰·전경 등이 집회 현장에서 착용하는 보호장비와 조끼로 인해 이름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⁷⁰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행위를 불 처벌하는 관행은 공권력 남용의 근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¹⁷¹
4.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행위는 크게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5.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무려 2,50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¹⁷² 경찰은 집회해산을 목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정조준 발사하고,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했다. 도망가는 시위대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군

¹⁶⁶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4·5차 국가보고서, 단락 187.

¹⁶⁷ A/HRC/31/66, para. 20.

¹⁶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연구총서>

¹⁶⁹ The Third, Fourth, and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186.

¹⁷⁰ A/HRC/32/36, para. 43.

¹⁷¹ Amnesty International,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P. 41.

¹⁷²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1p, 참여연대, 2010.10.8

훗발로 짓밟는 등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았다.¹⁷³ 광우병대책회의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의 80%이상이 안면부위 및 두부 외상을 입었고, 두부 외상의 절반 이상은 후두부 부상이었다. 이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과 머리를 곤봉이나 방패로 가격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부상당한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인권옹호자들과 변호사들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다.¹⁷⁴ 뿐만 아니라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비폭력적 활동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을 구금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¹⁷⁵

6.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촛불집회 관련 1,600여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 후에도 48시간 자의적 구금을 통해 형벌에 가까운 반인도적인 법집행을 하였다. 구금 중에 의료 서비스 요청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¹⁷⁶ 또한 변호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시위참여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자 경찰은 각종 핑계를 대며 접견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에게 피의자 소재지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의 소재를 불명케 하여 변호인접견권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¹⁷⁷

7.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의 진압이 과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시위진압대원들의 투척행위 금지, 소화기 사용과 자술서 관련 권고만을 수용하고, 식별표시 부착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수용’ 통보를, 살수차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통보를 하였다.¹⁷⁸

27. 정신질환치료 및 시설

(질의목록 36)

1. 실태

1) 한국 정신병원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약 75%는 강제입

¹⁷³ 서울지방경찰청, 촛불집회 여대생 폭행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 2008.6.5

¹⁷⁴ 참여연대,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5p. 2010.10.8

¹⁷⁵ UN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요청서, 2008.7.10

¹⁷⁶ Amnesty International,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para. 4.4, 2008. 10

¹⁷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촛불 2주년, 민변촛불토론회”, p.45. 2010.5.11

¹⁷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경찰 권고 일부불수용 공표”, 2009.11.18

원제도로 입원한다. 이들은 평균 190일 이상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한 병원에서 퇴원하면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또 다른 병원으로 떠돌기 때문에 실제 입원기간은 훨씬 더 길다. 정신보건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강제입원 시키고자 할 때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지만, 계속입원심사에서 설령 퇴원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병원에 재입원시켜도 무방하다.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2000년 5만8010개에서 2013년에는 9만6965개로 늘었다¹⁷⁹.

- 2) 2014년 인권위에 제기된 정신장애인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2789건이었고, 이 중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에 관한 사건이 354건으로 약 12.6%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⁸⁰.
- 3)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한 환자 424명, 의료진 포함 직원 286명 등 총 71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격리·강박은 과도하고 너무나 빈번했다. 10명 중 4명이 '과도하다'고 답한 것. 응답 환자 21.8%의 경우는 신체적 부상까지 당했다. 대부분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유도복, 태권도복 띠에 강박을 당하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당한 환자들이 많았다. 부당한 인권침해로는 보호자, 환자에게 설명 없는 격리·강박 시행이 가장 많았다(30.2%).¹⁸¹

2.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 1) 정신보건법이 2016. 5. 29. 전면 개정되어 오는 2017. 5. 30.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률의 내용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개월 후인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3. 개선 과제

- 1) 개정법률에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국·공립 정신의료 기관에 한정(개정법률 제46조제1항)하고 있다. 위원회 구조에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보호입원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절차를 통해 부적절한 입원이 얼마나 걸러질지도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강제입원에 대하

¹⁷⁹ 「8만명 중 75% 강제입원」 2017. 1. 3.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205>

¹⁸⁰ 이화영 외 5,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연구, 2015. 국가인권위원회

¹⁸¹ 「인권없는 지옥, 정신병원 격리의 민낯」, 2015. 11. 9.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51119120728479198>

여 심사하고 입원되는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¹⁸²

- 2) 정신병원 환자가 입원시 지방정부의 부담은 6~7%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당한다. 2014년 기준 의료급여 입원환자 중 48.3%는 361일 이상 입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용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현 구조는 정신병원에서의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서비스도 중앙정부가 함께 담당하여 큰 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퇴원 및 지역복지를 총괄하는 재정관리가 시급히 요청된다.

28. 가정과 학교 체벌 관련 법률, 교육조치

(질의목록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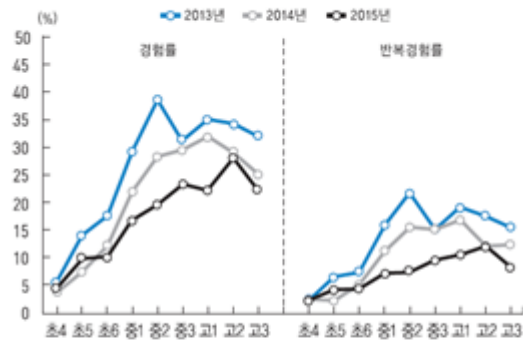
1. 학교에서의 체벌

- 1) 2011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지 5년이 지났고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원복무 관련 연수에서도 체벌금지를 교육하고 있다고 하나, 학교에서의 체벌은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다.¹⁸³
- 2)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그러나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고, 1달에 1-2회 이상 반복해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 역시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더 높았다. 신체적 처벌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던바, 여전히 정서적·물리적 체벌이 지도 및 훈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¹⁸² 김선화, 이만우,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1205호, 2016. 10. 10., 국회 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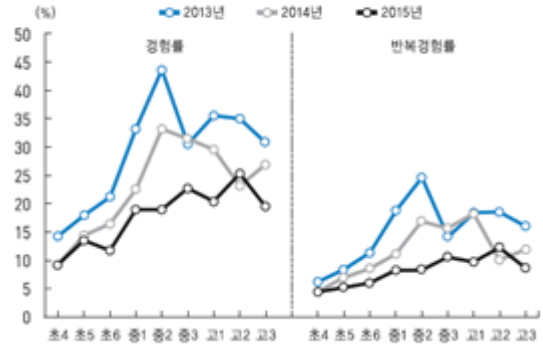
¹⁸³ 연합뉴스(‘16.11.23.) <법으로는 금지했지만...끊이지 않는 '학교 체벌'>

[그림 IV-28]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 경험률, 2013-2015



주: 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률은 전제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반복 경험률은 전제 조사대상 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V-30] 초·중·고 학생의 학년별 체벌 경험률, 2013-2015



주: 1) 체벌 경험률은 전제 조사대상 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제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반복 경험률은 전제 조사대상 학생 중 최근 1년 동안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제법을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원자료, 각 연도

3)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정내용의 대부분이 ‘경고·주의 조치 또는 인권교육 실시’에 그치고 있으며¹⁸⁴ 무엇보다 결정의 효력이 권고에 그칠 뿐이어서 인권침해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2. 가정에서의 체벌

1) 정부는 ‘가정에서의 체벌이 친권자의 친권행사로써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하는데,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¹⁸⁵,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¹⁸⁶, ‘사회생활관계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용인될 정도의 행위’¹⁸⁷ 등으로 정의한다.

184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한 사례에서 “OO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초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아동 및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한 사례(2016.09.29. 15진정1011100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한 사례(2016.08.24. 16진정0396900 OO교사의 학생 체벌), 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에게 폭언 등을 반복한 사례에서 “OO중학교 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2015.11.10. 15진정0336200 교사의 모욕적 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고 결정한 사례.

185 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186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도2104 판결

187 대법원 1994.11.11. 선고 93도3167 판결

- 2)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로서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현실이며,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이를 위하여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¹⁸⁸ 또한 그 기준이 되는 사회상규의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우려도 있으며,¹⁸⁹ 친권자의 훈육을 이유로 하는 폭행 및 정서학대와 관련한 판결들은 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낮다.¹⁹⁰
- 3) 교육부는 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대한 대책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급학교가 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장기결석 아동의 출석 인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하였지만,¹⁹¹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 뿐이며¹⁹² 교육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 4) 더욱이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5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뿐이고,¹⁹³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할 수 없다. 이마저도 수사기관·교육기관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는 부재하다

29. 이주민 권리보호

(질의목록 38)

1.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절차적 문제

- 1) 미등록이주자 단속 문제는 단속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대다수 발생한다. 길을 가

188 민법 제913조 및 제915조

189 박찬걸(2016),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 사유와의 관계, 형사법연구 28(1), 한국형사법학회, 3~29.

190 ① 피해아동이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15회 가랑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했으며, 흉기인 17cm 식칼로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한 사례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을 판결함(울산지방법원 2015.5.14. 선고 2015고단 777 판결). ② 피고인 계모는 피해아동 A가 밥을 늦게 먹는대거나 친모에게 가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상습적으로 구타함은 물론 칼이나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찌르거나 때리고 가위의 양날에 피해자의 발을 끼워 누르는 등 수차례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으며, A의 입에 칼날을 집어넣고 커터칼의 칼날을 삼키도록 지시하거나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이는 폭행과 학대행위도 하였음. 심지어 피고인이 불러주는대로 유서를 쓰게 한 후 자살을 교사하기도 하였으나, A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음.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에게도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쇠파대기로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B가 경찰에 신고하자 A에게 경찰조사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례에서 징역 6년을 판결함(대구고등법원 2015.6.11. 2015노62 판결).

19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19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19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다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무작정 잡고 끌고 가 비자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단속반원의 복장 및 신분증 제시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여전하다. 2016년 12월에는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황단보도를 건너다, 사복을 입은 단속반원 남성 두 명이 일제히 팔짱을 끼며 반대편으로 급히 걸어가 비자 제시를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적을 취득한 그녀는 단속반원의 무자비한 행위를 지적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때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기 위해 10개 국어로 작성된 고지문(미란다 원칙 등 기재)을 교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황단보도에서 고지문을 교부하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끌고 간 것이다.

- 2) 단속반원들에게 있어서는 ‘도주의 우려’가 단골 변명거리이겠지만, 남성 두 명이 여성 한 명을 상대로 ‘도주의 우려’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게다가 앞의 141번에 살펴 본 실제사례에서, ‘영문도 모른 채 차량에 1시간 동안 감금당한’ 것과, 식사 중에 진행되는 단속과정 동영상을 보면 ‘10개 국어로 작성된 고지문을 교부하고 있다’는 정부의 답변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2003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향후 단속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 연행지를 밝히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등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4) 2009년 11월 19일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정지, 질문 및 단속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에게 최소한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래서 ‘10개 국어로 작성된 고지문을 교부하고 있다’고 정부는 답변을 했으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이 외국인에게 질문하거나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식당에서의 단속과정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지문 교부는커녕 자신들에게는 법적인 하자가 없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실제 단속과정의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10개 국어로 작성된 고지문을 교부하고 있다’는 정부의 이 답변은 거짓이다.

2. 단속과정에서 무시되는 인권보호 준칙

- 1)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긴급보호하는 때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제11조 제2항), 용의자신문 전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제16조)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제17조

제1항).’고 하는데, 실제로 ‘미리’ 알려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추가 형사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고, 당사자가 이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절차가 있는데, 출입국 단속과정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인권보호의 측면은 무시된 채 불법 체류만을 문제 삼아 강제출국 시키려는 사례들¹⁹⁴¹⁹⁵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진정성 있게 위의 사항들을 ‘미리 알려준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2) 게다가 언어소통에 있어서도 거대한 장벽이 있기에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의 199번과도 연계해서 살펴보면,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서로 된 고지문이 ‘미리’ 교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한국어로 ‘미리 알려주었다’고 말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당연한 권리를 고지 받았고 이해했음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확인도 출입국관리공무원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입장에서 이해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긴박한 강제단속 과정에서도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강제단속은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단속과정 어느 시점에서 본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지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외국인보호소 실태

- 1) 정부는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접수된 사안의 상담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 통계만을 근거로 한 것임을 2016년 공익인권변호사 간담회¹⁹⁶에서 밝힌바 있다.
- 2) 오마이뉴스 2017년 2월 11일자 인터넷뉴스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시설인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난민소송을 이유로 나이지리아인 A씨를 4년 넘게 구금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인 A씨는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 때 관련 박람회 참여 관련 비자로 들어왔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불심검문으로 체포돼 지금까지 4년 2개월 넘게 화성보호소에 갇혀있는 상태이다.¹⁹⁷

¹⁹⁴ 김보성 「‘유명무실’ 이주노동자 보호제도? 중국인 왕 씨는 왜 구금됐나」 민중의 소리 2015-03-19
<http://www.vop.co.kr/A00000861757.html>

¹⁹⁵ 구자환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강제출국 당하게 된 이주노동자」 민중의 소리 2016-10-25
<http://www.vop.co.kr/A00001081401.html>

¹⁹⁶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11.28. 공익인권변호사 간담회

¹⁹⁷ 김도균, 「화성외국인 보호소, ‘4년째’ 보호외국인 구금 ‘충격」, 오마이뉴스, 2017. 2. 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7237&CMPT_CD=P0001

3) 나이지리아인 A씨처럼, 행정적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단속돼 화성, 청주, 여수 등지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보호 외국인'은 현재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소에서 1년 이상 구금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화성보호소만 해도 3년 이상 구금생활을 하는 외국인은 A씨를 포함해 세 명이며 '외국인보호소'라고 하지만 철창으로 된 비좁은 방에 국적도 다른 여럿이 갇혀 하루 종일 지내야 하기에 사실상 구금시설인 것이다. 수감자는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난동을 피우면 '독거실'이라는 징벌방에 갇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의 죄수는 '형기가 만료하면 출소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외국인보호소에는 그런 게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보호 외국인의 구금 기간을 '10일 이내'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한다(법 제52조). 하지만 같은 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63조)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3개월마다 심사 후 허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심사허가 기준이 없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¹⁹⁸

4)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당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보호시설을 행정당국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최고도로 제약하는 공권력 행사인 '구금'이 집행되는 시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¹⁹⁹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보호시설을 구금시설로 이행할 경우 1. 보호시설내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개선사항, 2. 보호자체에 따른 기본권 위법·부당한 제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논의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5)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제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호소 입소과정, 시설내 처우, 구금실 조사, 공무원 처우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또한 보호해제, 변호사조력권, 보호소내 난민신청과정, 면회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시설, 장기구금자 건강권문제, 급식실태, 건강권 등이 준수되고 있으며 적정성이 있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4. '아동구금금지 원칙'을 위반한 미등록이주아동 구금

1)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 4조 2항에서는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구보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아동을 구금화시킬 것을 전제로

¹⁹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¹⁹⁹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제5항

하고 있으며, 교육권 등의 보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2) 따라서, 미등록이주아동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보호소에 갇힐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범²⁰⁰은 각국에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²⁰¹이 고려되고, 아동의 발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적절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2013.1.~2015.6.까지의 이주아동구금 실태에 대한 정부공개 청구 결과, 위 기간 동안 구금되었거나 구금되고 있는 미성년자 (18세미만)의 수가 총 98명이었다. 초등학교에 속하는 연령대인 8-13세의 아동들은 7명이며, 14-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65명에 해당하였고, 그 중에서도 17세의 미성년자가 49명으로 50%에 이른다. 14-18세 미성년자들의 구금기간은 3일이하가 대부분이긴 하나, 오히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에 미성년자들이 구금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서의 구금원칙'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²
- 4) 한편, 구금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고를 주목해야 한다. 2016년 9월 뉴스 보도로 알려진 에머슨(5세)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외국인보호소에 한 달 구금된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나타냈다. 구금시설에서의 차별적 태도와 억압적 환경은 아동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동은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상당하다. 이는 이주아동의 구금이 왜 아동최선의 이익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짧은 구금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아동 피구금자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동을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않고도 대안적인 환경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보호일시해제

- 1) 미등록 체류자 중 환자 등 취약그룹은 일시보호 해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다는 당사국의 답변과 달리 부당하게 추방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 얻은 실명치료와 산재보상등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²⁰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호신청아동과 난민 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인권위원회는 196개 국가에서 비준된 유엔아동권리협약 하에서 개별국가는 아동이 미등록상태이거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구금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별국가는 아동의 부모가 구금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근거로 아동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일반논평 제 6호 제 61항)

²⁰¹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²⁰² 공익법센터 어필 자료(2015. 9. 7)

과 자살기도까지 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에 의해 결국 강제송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 2) 행정적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단속돼 화성, 청주, 여수 등지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보호 외국인'은 현재 수백 명에 달한다. 자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호소에서 1년 이상 구금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2017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보호소만 해도 3년 이상 구금생활을 하는 외국인은 A씨를 포함해 세 명이다.²⁰³
- 3)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보호 외국인의 구금 기간을 '10일 이내'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한다(법 제52조). 하지만 같은 법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63조)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해 놓았다.
- 4)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4년 넘는 장기구금자가 생겨난 것이다. 그럼에도 A씨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출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태이고 최종 판결이 내려면 하염없는 세월을 견뎌야 한다. A씨 사례와 같은 난민신청 소송자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보증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호의 일시해제'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한 '보호 해제' 제도를 현행보다 더욱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²⁰⁴하는 데다 그마저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보호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또 법무부 장관이 3개월마다 보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데 추가 연장을 불승인하여 '보호 해제'를 한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다.

6. 학령기 청소년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강제추방

- 1) 2012년 10월 5일 몽골로 추방된 빌궁(당시 17세)군은 한국인학생들과 몽골인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다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신분 조회에서 미등록자임이 드러나 추방되었다. 당시 빌궁 군은 미성년자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 당시 성인들과 한 방에서 4일 동안 지내야 했다. 이 불은 더러웠고, 낯모르는 성인들과 지내면서 빌궁 군은 두려움을 가지고 지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할 때,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할 때, 추방당일 차량에 탑승하여 공항까지 이동할 때 빌궁은 수갑을 차고 이동하였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는, 여러 명의 성인추방대상자들과 손을 엇갈리게 하여 수갑을 차고 이

²⁰³ 김도균, 「화성외국인보호소, '4년째' 보호외국인 구금 '충격」 오마이뉴스, 2017.02.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7237&CMPT_CD=P0001

²⁰⁴ 출입국관리법, 제6장 제6절 제65조 2항

동했으며, 공항에서 탑승을 대기하는 시간에도 같은 자세로 수갑을 찬 채로 비좁은 차안에서 성인들과 끼어앉아서 비행기가 도착할 동안 기다려야 했다. 비행기가 도착하여 탑승하러 갈 때에도 여러 명의 몽골인 추방대상자들과 나란히 수갑을 찬 채로 일반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긴 탑승통로를 걸어갔다. 출입국관리국은 왕래하는 일반 탑승객들이 수갑을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손목을 덮어주었고, 비행기 앞에 도착했을 때 수갑을 풀어주었다. 대기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행기 탑승 이후에 물이 제공되었다.

- 2) 이러한 사례는 어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경찰청은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인을 적발하게 되는 경우 법무부로의 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그를 추방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의 목격자에 대해서는 추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해자’만 보호하도록 한 조치로 인해 유일한 사건 목격자가 미등록 상태일 경우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3) 미등록 아동의 추방 시 현지 가족에게 어떻게 인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현재 출입국사무소 및 보호소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방을 운영하는 등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근거 자료와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운영이 된다면 최근 5년간의 이용현황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빌궁 군의 사례가 발생한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속되어 출입국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다가 추방된 미성년자의 현황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구금 배제의 원칙이 명확히 이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4) 초·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학생과 부모에 대해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여 중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을 고등학생에 대하여도 학습권을 보장 확대하는 비공개 내부지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7. [추가 의견] 사업장이동의 제한

- 1) 2009년 까지 이주노동자들은 1년에 1회, 즉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끝나는 마지막 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3년 만료 후 1년 10개월 기간 체류 연장을 할 때에는 “현재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만 회사의 체류 연장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3년 만료 후에도 다른 회사로 갈 수 없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인 직장 이동이 불가능하며,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아 추가 연장을 하게 되는 경우 총 9년 8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일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강제노동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사유화시키고 종속시킴으로써 노예적 노동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써, 제도적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조사²⁰⁵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 중 조사 대상의 37% 가량이 현 회사를 떠나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조사²⁰⁶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62.8%가 현재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현재의 직장을 떠나고 싶다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현재 6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강제노동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정부는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이주노동자는 제약 없이 다른 근무처를 구할 자격을 갖는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강제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그 폭력성이 심각하며,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노동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 3)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알선장을 지급하여 구인 사업장들과 자유롭게 접촉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2012년 8월부터 금지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지리를 잘 모르며,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켰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브로커가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없다. 또한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구인 사업체에 추천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로지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선택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를 3개월 동안 11회 추천할 뿐이며, 이 횟수가 끝나면 역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자가 된다.
- 4) 이미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4년 10개월 동안 자발적 근무처 변경이 불가능하다. 폐업 등 회사측의 사정으로 직장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고 있고, 이에 더하여 자유롭게 구인업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에서의 제도 변화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 5) 또한, 정부는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찾아준다면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가 강압적으로 변화시켜 시행된 제도 하에서도 매년 수천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초과로 인한 미등록자의 수는 2014년 3,812명이며, 사업장 변경 신청자 중 구직기간(3개월) 초과로 인한 미등록자의 수는 2014년 2,817명이다.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매년 6천명

²⁰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09,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 자료집”, 30쪽

²⁰⁶ 충청남도, 2016,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83쪽

이상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1개월)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구직기간(3개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미등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미등록자 단속을 위해 법무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미등록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등록자의 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14,713명이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함으로써 미등록자가 된 이들의 숫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22,582명이다. 이렇듯 직장 이동 과정에서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는 이들의 수는 2010-2014년 5년 동안 총 37,295명²⁰⁷이다.

<사업장 변경 중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등록자의 수>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No.	1,727	3,593	3,839	2,737	2,817	14,713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1개월) 초과하여 발생한 미등록자의 수>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Total
No.	1,353	4,447	7,728	5,241	3,812	22,581

- 7) 이들은 당사국의 경직되고 까다로우며, 매우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의 규정들로 인해 미등록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이동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규제 중심의 규정을 강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권리와 기회는 약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기업체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8) 2012년 이후에 사업장 변경 기간(3개월)초과자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정부가 강압적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결과일 뿐 구직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직자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면 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규정 삭제, 추천 횟수 제한규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8월 이전으로 돌아가 이주노동자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구인업체의 현황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하도록 고용센터의 역할을 회복시켜야 한다.

²⁰⁷ 국회 다정다감포럼, 2015,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58쪽

- 9) 농업분야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3개월의 구직기간이 임박하면, 고용센터는 구직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겨울이 다가와 해고되는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년 가을에 추수를 마친 농업분야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고, 농업 노동자들은 제조업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다른 농장으로 가야하지만 대부분 농업 농장들이 겨울을 앞두고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 3개월 동안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미등록자가 되고 있으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단속과 추방뿐이다.

8. [추가 의견]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생활

- 1)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 3조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수용시설로서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소장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매주 3회 1시간의 운동, 동감프로그램, 종교활동시간을 제외하면 개별 거실 밖으로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구금적 형태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정신적 신체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며, 외국인에게 출국준비를 위하여 일시적 보호 장소로 인식되기 보다는 신체적 상태를 억압하는 ‘구금’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게 된다. 현재 외국인보호시설 운영은 범죄에 의한 구금적 조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보호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교정시설이 아니므로 보호시설 내의 생활도 일상생활과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권적인 관점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형사 범죄자가 아닌 행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자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이 운영되어야 [출입국관리법] 제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9. [추가 의견]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여성 건강권

- 1) 2016년 7월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구금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생리대를 정해진 수량으로 지급하고 주말에는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이주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중이던 이주여성 a씨는 보호소로부터 생리대를 받지 못해 수건을 사용했으며 생리혈이 묻은 바지를 빨아 입기도 했다.²⁰⁸ 이에 대해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생리대 지급규정을 설명함에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이는 첫째, 생리대를 지급규정을 여성의 필요에 맞게 하지 않은 점, 둘째, 구금된 이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제반 사항이 모국어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 등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성의 건강권이 일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인보호소 내 언어적 소통의 문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209 210}

²⁰⁸ 전종휘, 「‘외국인보호소 여성 “생리대 안줘 수건으로 대응”」, 한겨레신문, 2016. 07. 04. /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상담사례(2016. 07. 02)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접수(16-0010459)

²⁰⁹ 외국인보호규칙 제 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에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 칫솔, 치약, 비누, 위

30. CAT 선택의정서 비준 및 국가예방기구 설립

(질의목록 39)

1. 대한민국정부는 이미 2006년에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²¹¹ 1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²¹² 정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있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정부가 단지 그 비준을 할 의사가 없음을 숨기려고 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에 대해 그동안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년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이는 유엔조약기구 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지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예방기구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²¹³ 양자는 여러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택의정서 상의 국가예방기구는 젠더균형, 인종과 소수민족의 적절한 대표 등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좀 더 엄격한 구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등이 전제되는 것임에 반해 선택의정서 상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사전예고 없는 방문을 허용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방문은 사전에 고문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술에 근거하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제20조 참조).²¹⁴ 또한 선택의정서 상의 방문대상 장소는 감옥, 구치소, 다수인보호시설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구금·보호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즉 행정 또는 당국(authority)의 명령으로 인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공공·시설의

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²¹⁰ 외국인보호규칙 제 15조 3항: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기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한다.

²¹¹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UN Doc. CAT/C/KOR/CO/2, 25 July 2006, para. 22.

²¹² 대한민국,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3-5차 정기 국가보고서, UN Doc. CAT/C/KOR/3-5, para. 207.

²¹³ 대한민국,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3-5차 정기 국가보고서, UN Doc. CAT/C/KOR/3-5, para. 207.

²¹⁴ 최태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 및 가입 시 고려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대한국제법학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5. 12. 16, p. 19.

감호환경(public or private custodial setting)까지 포함된다.²¹⁵ 따라서 최근 문제가 대한민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금장소, 예컨대 탈북자들을 감금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감염병 관련 격리 장소, 공항과 항구에서의 난민신청자 구금 장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나 국가예방기구는 당연히 이들 장소를 방문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문과 이와 유사한 침해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통해 고문방지 소위원회와 엄밀한 의미의 국가예방기구의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1. 대 테러조치

(질의목록 40)

1.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야당 의원들의 장시간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016. 3.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아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2016.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2.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제정되지 못했으나 약 15년 만에 법제화한 것이다.
3. 테러방지법은 테러, 테러단체 등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 인권침해적 조항을 다수 담고 있다.
4. 테러방지법은 다른 나라의 비밀정보기관과 달리 국내·외를 망라하여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일정 범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업무 조정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의 정보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인권 침해 요소가 매우 강하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인권을 위협하는 국가기관이다.
5.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대테러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있으나, 2016. 7. 21. 서울대 법학교수이지만 검사 출신인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인권옹호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6. 대테러인권보호관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브리핑을 전혀 내놓지 않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²¹⁵ 최태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 및 가입 시 고려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대한국제법학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5. 12. 16, p. 33.

32. 제2차 보고서 이후 인권보호 법률적·제도적 진전

(질의목록 41)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2015. 12. 29. 제정하여 2016. 6. 30.부터 시행하면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혹행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 1)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간부 3명이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고²¹⁶,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라’, ‘초코바 180개 먹어라’는 강요를 하고, ‘알몸 마사지’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²¹⁷.
 - 2) 영창은 영장 없이 행하는 군인징계로서 강제구금인데, 다양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했다²¹⁸.
2. 인권침해 구제와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2016. 2. 3.)하여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인권위원의 인권친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1) 대통령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인권활동이 전혀 없는 인사를 지명했으며, 여전히 인선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²¹⁹.
 - 2) 대법원장은 2017. 1. 연임 결정한 인권위원을 2017. 3. 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²²⁰.
 - 3)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중 2인은 법조인, 1인은 정치인 출신이고, 비상임위원 7인 중 5인은 법조인, 2인은 종교인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²²¹.

33. 제2차 보고서 이후의 NAP

(질의목록 42)

1.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기 NAP(2012-2016)과 제3기 NAP(2017-2021) 수립을 권

²¹⁶ SBS 2017. 3. 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5096&plink=ORI&cooper=NAVER>

²¹⁷ 동아닷컴 2017. 1. 24. <<http://news.donga.com/3/all/20170124/82563344/2>>

²¹⁸ 경향신문 2017. 3.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81105001&code=940100>

²¹⁹ Ablenews 2016. 11. 3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61130145631520027>>

²²⁰ gsruftp 2017. 3. 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372.html>

²²¹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5003001001>>

고했다.

2. 2기 NAP에서 “피의자신문조사 작성제도 폐지를 통한 밀실수사 방지”를 권고했으나²²²,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제2기 NAP에서는 법무부가 수사편의를 위해 자백조건부 감형, 허위진술 처벌 등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²³.
4. 제3기 NAP에서는 제1기와 제2기 NAP에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재권고 하였다²²⁴.

34. [추가이슈] 형제복지원

1.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내무부훈령 410호²²⁵를 근거로 ‘부랑인’이라 규정한 사람을 영장 발부 절차 없이 한국 부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1960년에 설립되었고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5년 전부터 폭력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에 강제 감금하고, 임의의 피해자가 폭행과 성폭행 강제 노역 등 폭력에 노출되도록 비인도주의적 조치를 자행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 노숙인을 사회에서 ‘청소’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도 사건의 배경이다.
2. 1975년부터 86년까지 12년 동안, 형제복지원 안에서 513명이 사망²²⁶했으나 기록의 사인과 실제 사망 원인이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수의 사망자는 강제 노역과 폭행 과정에서 사망했고, 이들은 형제복지원 시설 부지에 암매장되거나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렸다고 한다²²⁷. 형제복지원 사망자의 시신은 2017년 현재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참혹성과 잔인함이 무색하게도 형제복지원의 원장이던 박인근은 국고보조금 횡령죄 만으로 항소심을 거쳐 징역 2월 6개월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데, 2016년 사망한 박인근은 출소 후 시설 이름을 바꾸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복귀해²²⁸ 수익

²²²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12. 1, p. 115.

²²³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12. 1, p. 109.

²²⁴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2016. 7, p. 114.

²²⁵ 박정희, 1975. 12. 25., 내무부훈령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²²⁶ 신민당, 1987. 2. 4.,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제1차 보고서), 5쪽

²²⁷ 이상우, 2013. 10. 10.,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33쪽

²²⁸ 부산북구청장, 1994. 12. 10., 사회복지법인 읍의마을 박인근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사업을 확장한다²²⁹.

3.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밝혀지고 27년이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²³⁰이 제정되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2016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015년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현재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여타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 선행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²³¹” 라고 말하며 사실상 형제복지원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 안정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 하나의 인권침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나쁜 선례를 만들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²³².” 이는 행정부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과 진실 규명을 반대한다는 증거다.

35. [추가이슈] 대구 희망원

1. 개황

- 1)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은 195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대구광역시로부터 운영권을 수탁 받아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산하에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 4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는 1,150명의 생활인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2. 시설 거주 다수 생활인의 대량 의문사와 사망사건 조작, 보호의무 소홀

- 1) 희망원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309명의 생활인(전체 정원의 26.9%, 연평균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²³³,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1000명당 사망자(5.4명)의 7.5배에 달한다.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1975년~1987년)동안 531명(연평균 44.3명)이 숨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문제적인 수치이다. 사망한 생활인들 대다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라는 점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11월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사망한

²²⁹ 부산광역시장, 2009.3.25., 기장군 사회복지과-10771,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장기차입허가사항 알림 ; 차입 조건 : 사상해수온천 리모델링 사업비.

²³⁰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²³¹ 19대 국회, 2016. 11. 27., 제337회 4차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²³² 김동형, 「AP : South Korea covered up mass abuse, killing of “vagrants”」, 2016. 4. 19., <http://bigstory.ap.org/urn:publicid:ap.org:c22de3a565fe4e85a0508bbbd72c3c1b>

²³³ 김광수 국회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경찰청

309명 중 최소 29명이 사망 원인에 의문이 있다고 밝힌 점에서도 그렇다²³⁴.

- 2)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결정문에서 ‘시설종사자들이 평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인들의 행동특성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고, 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망사건이 원인에 대한 조사없이 단순 병사로 처리되어 사망 전 질식, 낙상, 폭행 등 피해 발생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질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3. 생활인들에 대한 불법감금, 부당노동강요, 폭행 및 갈취 등 가혹행위

- 1)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쇠창살로 이루어진 공간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질서유지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독방에 가두거나 쇠사슬을 채우는 등 학대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종사자들이 시설거주인 중 일명‘동장’을 두어 동료 거주인들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군대식 일석점호 실시, 생활지도를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 폭언 및 폭행, 앞드려뺨쳐 및 바닥에 머리박기(일명‘원산폭격’) 등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등 흡사 ‘인간사육장’과 같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 2)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²³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입소자)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에게 맡겨, 환자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하고 취침한 상태에서, 구토 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희망원의 생활인들 대부분은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또는 신체장애인으로²³⁶, 장기간 노숙생활에 따른 지병악화 등으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시설 측은 입원한 생활인들 중에서 ‘간병도우미’를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간병시간(24시간)과 적은 보수²³⁷로 인해 자원자가 적어, 대부분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간병인으로 동원한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시설 측은 생활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내부규칙을 두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생활인들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 최장 47일 ‘안정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강제 격리하기도 했다. 무단 외출을 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9일 감금된 생활인이 있었으며, 그릇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23일 간 감금된 생활인

²³⁴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16직권0001700. 16진정0246200(병합)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2016.11.14.)

²³⁵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대구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7.2.9.)

²³⁶ 2016년 전체 생활인 1,091명 중 정신장애인 614명(56.3%), 지적장애인 182명(16.7%), 지체장애인 110명(10.1%), 알코올중독 100명(9.2%), 기타 시각·청각 장애인 등 85명(7.7%). 위와 동일자료.

²³⁷ 일반적인 유료간병은 일당 약 8만 원을 받는 간병인 2명이 2교대로 간병하고 있으나, 희망원 내 부속병원 ‘요양실’ 간병도우미는 24시간 간병 대가로 월(月) 약 5~10만 원을 받았고, 외부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도우미는 24시간 간병 대가로 월(月) 약 15만 원을 받았음. 위와 동일자료.

도 확인되었다²³⁸.

- 4)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사를 통해 1990년 이전부터 내부규정을 통해 음주, 도박, 무단외출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 한 생활인에 대하여 시설 측이 자체적인 ‘윤리위원회’를 거쳐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사실 감금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 5)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생활관별로 거주인의 상하관계를 조장하는 동장제도의 운영, ② 자의적인 시설 운영규정을 두고 생활규정을 위반한 거주인에 대한 징벌적 보호실(독방) 감금 조치, ③ 직업재활계획 등에 따른 적절한 작업평가와 적정 임금의 지급이 없는 취사, 간병 등 부당 노동행위, ④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갖는 거주인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 강압적인 개입 관행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4. 근원적인 문제 : 수용시설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 1)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입소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설 입소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은 13.90%에 불과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의 설득 또는 강요로 비자발적인 입소를 한 경우가 82.88%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²³⁹.
- 2) 한국의 NGO는 지금의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를 그 운영주체인 특정 종교 법인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조직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더불어 근원적인 원인제공자로서 한국 정부와 대구광역시 자치단체를 지목한다. 수용시설은 본인이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으로서 시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이 살아가는 곳에서 집단적인 생활과 규율 등으로 인해 어떠한 인권침해나 비리를 목격하거나 때로 피해받는다 하더라도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장기적인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생활인들의 권리는 배제되며, 무력화된다. 이것은 또 다시 수용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 원리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 [추가이슈] 신안 염전노예

1. 사건의 발단²⁴⁰

²³⁸ 위와 동일자료.

²³⁹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2)

²⁴⁰ 이하 내용은 ‘염전지역 장애인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2014.6.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석사학위 논문 ‘염전노예사건의 반인권성에 대한 고찰과 국가의 과제에 관한 연구’(김강원, 2015)에 근거한 것임 http://15775364.or.kr/bbs/board.php?bo_table=B62&wr_id=2497&page=2

- 1) 2014년 1월, 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 섬(신의도)에 위치한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를 당하던 한 장애인(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중복)이 서울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살려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관을 소금 유통업자로 위장시켜 신의도로 잠입하였고, 피해자 2명을 구출하면서 지역 일대에 만연해 있던 노예 노동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²⁴¹²⁴²

2. 사건의 진행 과정

- 1) 전남 신안군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인데다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역에 만연해 있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이 ‘관행’으로 오랜 세월동안 묵인되어 왔다. 한국인들은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언론들이 지역 일대의 만연해 있는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사건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특별 수사대를 구성하여 신안군 일대를 조사했으며, 장애인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²⁴³는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특별 수사대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3. 사건의 내용과 현재 상황

- 1) 염전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장애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한 피해자의 수는 63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신의도에서 발견된 피해자이다.(신의도에는 500개가 넘는 염전이 있으며, 신안군에서 가장 염전이 많은 섬이다.) 피해자 63명 중 47명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들 중에는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주된 장애는 지적장애였다.
- 2)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은 대부분 유사했으며 돈을 주겠다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꾀에 빠져 섬으로 들어왔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으며 염전이라는 노동 환경은 매우 가혹했다. 형편없는 숙소와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폭행과 폭언이 빈번했다.
- 3) 마을 주민들, 공무원들, 경찰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한 통속이

²⁴¹ 서울 구로경찰서 보도자료 <http://www.smpa.go.kr/user/nd92441.do>

²⁴² “A living hell” for slaves on remote South Korean inland salt farms, cbsnews, 02.01.2015, <http://www.cbsnews.com/news/a-living-hell-for-slaves-on-remote-south-korean-island-salt-farms/>

²⁴³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었고, 섬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목격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서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다. 하루에 4번 밖에 배가 다니지 않는 선착장에서는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이 혼자서 배를 타려고 하면 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인부가 도망간다고 알려주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잡아갔다. 그리고 가혹한 보복이 따랐다.

- 4) 근로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섬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으며, 많은 경우는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에는 약간의 돈을 받고 섬에서 나와 육지에서 생활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브로커를 따라 섬으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했다.
- 5) 경찰은 사건의 가해자들을 40명 이상 기소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중 20건은 RIDRIK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RIDRI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건 중에서 1건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13건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6건²⁴⁴에 불과하며,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은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다른 사건들은 6개월에서 최장 3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처벌로써 인권단체들의 많은 반발을 샀다.
- 6)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쉼터는 존재하지 않아 이들은 홈리스 쉼터를 이용해야 했으며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심지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민간단체인 RIDRIK이 유일한데, 10여명 정도가 RIDRIK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또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 7) 현재 RIDRIK는 다른 장애인단체들, 공익변호사그룹들과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4번이나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경찰이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탈출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 포함된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는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8) 피해자들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과 같은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드러나기 때문에 발견되는 피해자의 수는 적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염전에 남아 있을

²⁴⁴ 광주지법 2014노1953 징역 6월, 광주지법 2014노1770 징역 1년 4월, 광주고법 2014노248 징역2년, 광주고법 2014노273 징역 5년, 광주고법 2015노410,136(병합) 징역 1년 6월, 서울고법 2014노2699 징역 2년 6월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⁴⁵

<표> 피해자의 염전 유입 경로 (단위 : 명, %), RIDRIK 보고서

구분	빈도	퍼센트
직업소개소	34	62.7
염전주인이 직접	7	13.0
가족, 친척이 염전에 말김	6	9.5
스스로 염전에 들어옴	5	7.9
기타	2	6.9
합 계	54	100

37. [추가이슈] 집회시위 국가폭력(밀양, 강정, 쌍용자동차)

1. 한국에서는 여전히 국가권력의 자의적 사용과 경찰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파업에 대한 대응이나 국책사업 중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 상황에서 공권력 남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진압, 강정 해군기지 건설 강행,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등은 국가폭력이 자행된 대표적인 사건이자 총체적 인권침해의 현장이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은 강제퇴거에 저항하며 주거권과 생존권을 주장했다.²⁴⁶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권을 행사했다.²⁴⁷ 강정마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²⁴⁸ 밀양의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주장하며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²⁴⁹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는커녕 과도하고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였다.

²⁴⁵ 추가 정보 2014년, 2015년, 2016년의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https://www.state.gov/j/tip/rls/tiprpt/>

²⁴⁶ “Yongsan disaster revisited”, The Korea Times, July 4, 2012, available at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ion/2013/01/202_114439.html, accessed Mar. 5, 2017.

²⁴⁷ Kim Tong-hyung, “SSangyong Motor closes main factory due to strike”, The Korean Times, May 31, 2009, available at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09/06/123_45996.html, accessed Mar. 5, 2017.

²⁴⁸ Heo Ho-joon, “With naval base, can Jeju remain an “Island of World Peace”?”, The Hankyoreh, December 2, 2015, available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20051.html, accessed March 5, 2017.

²⁴⁹ Choi Sang-Hun, “As power line grows, so does fight between ancient and modern korea”, The Newyork Times, October 29, 2013,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3/10/30/world/asia/koreans-say-power-line-plan-threatens-tradition.html>, accessed March 5 2017.

2. 위 사건들은 모두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32명의 농성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1,600명과 경찰특공대 99명, 같은 해 쌍용자동차 점거파업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 100명, 경찰병력 2,500명을 투입됐다. 강정의 경우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육지에서 12만 8천4백명의 진압경찰이 파견되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2013년 10월에는 경찰병력 3,000명이 밀양에 투입되었다.²⁵⁰ 이는 비례원칙을 벗어난 경찰권의 과도한 남용이다.
3.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통해 농성자들과 그들을 옹호한 시민, 인권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 기소하였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경찰은 노조원 303명과 외부인 322명 등 625명을 검거,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²⁵¹ 강정의 경우 경찰은 주민들과 인권옹호자 등을 포함하여 총 673명을 연행하고 그 중 누적 구속자가 38명을 포함하여 550명을 기소하였다. 이 중 230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4년 3월 기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물어야 할 벌금은 4억여 원에 달한다.²⁵²
4. 농성이나 항의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은 참여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진압작전으로 인해 용산에서는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에 이르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²⁵³ 불복종 행동을 하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를 연결한 PVC 파이프를 망치로 깨거나(강정)²⁵⁴, 고령의 여성들이 송전탑 건설 부지의 벌목을 막기 위해 나무를 부둥켜안았는데도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는(밀양) 잔인한 처우들이 자행됐다.²⁵⁵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는 점거한 공장 안으로 헬기에서 최루액을 계속 떨어뜨리고,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쇠도리깨, 고무탄총 등을 사용하였다. 저항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집중적인 구타를 멈추지 않으며 무릎을 꿇리는 등 굴욕적 대우를 하기도 했다(쌍용자동차 파업).²⁵⁶

²⁵⁰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중 “국가폭력” 단락 5. 2013.12.18

²⁵¹ 서보미, 한국경제, “‘쌍용차 상태’ 52명 추가 조사”, 2009.8.11.

원문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1104931>

²⁵² 박송이, 주간경향 1137 호, “제주 서귀포시 말질로 187번지, 여기가 내 주소이자 무덤이다”, 2015.8.4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7281353521&code=115#csidxb0d246722250244848d2945e2417a8d>

²⁵³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국가폭력” 단락 6. 2013.12.18

²⁵⁴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국가폭력의 야만성 그 실체를 보다”, 2013.12.18

²⁵⁵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2013.12.18

²⁵⁶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쌍용자동차 상황”, 2013.12.18

5. 농성 중 또는 체포 이후 자행된 경찰의 비인도적 처우도 문제이다.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특공대가 연행중인 농성 철거민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폭행하며 연행하였다. 부상자들은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²⁵⁷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져, 국가인권위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조치와 권고가 내려졌지만, 이행되지 않았다.²⁵⁸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현장에서는 경찰이 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진의 반입을 금지하였다.²⁵⁹ 강정의 경우 해외 평화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평화 옹호 활동을 하다가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²⁶⁰ 밀양의 경우 경찰이 고령의 노인 여성들에게 “씨발년, 때려 죽일까보다”, “개 같은 년”과 같은 욕설, 협박 등을 일삼았다.²⁶¹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폭언 등으로 2012년 1월 16일 마을 이장인 이치우씨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2013년 12월 3일에는 송전탑이 지나가는 인근마을의 주민 유한숙씨가 음독을 하여 같은 달 6일 사망하였다.²⁶² 쌍용자동차 파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경찰의 파업 진압 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28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병이나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²⁶³
6. 폭력적이고 선제적인 경찰의 시위 대응으로 인해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농민문제, 빈곤문제 등에 항의하여 2015년 11월 14일 서울 곳곳에서 개최된 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69세의 농민 백남기님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다. 이후 백남기님은 317일 간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다 2016년 9월 25일 사망하셨다.²⁶⁴ 당시 경찰이 백남기 농

²⁵⁷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용산참사: 과도한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가폭력”, 2013.12.18

²⁵⁸ “NHRCK says police crackdown during Yongsan Tragedy was illegal”, The Hankyoreh, Feb. 10, 2010, available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403987.html, accessed Jan. 13, 2017.

²⁵⁹ “NHRCK asks police to stop crackdown at Ssangyong Motors plant”, The Hankyoreh, Aug. 6, 2009, available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369809.html, accessed Jan. 13, 2017.

²⁶⁰ A-HRC-25-55-Add1, para 81.

²⁶¹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p.76, 2013.7.13.

²⁶² Kim Jae-won, “Suicide aggravates conflict over pylons”, The Korea Times, Dec. 9, 2013, available at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10/116_147638.html, accessed Jan.13, 2017.

²⁶³ Kim Min-kyung, “Six years after layoffs, Ssangyong workers keep passing away”, The Hankyoreh, May 4, 2016 available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689678.html, accessed Mar. 5, 2017

²⁶⁴ Choe Sang-hun, “Activist in South Korea 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 The New York Times, Sep. 9, 2016,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16/09/26/world/asia/activist-in-south-korea-dies-of-injuries-from-police-water-cannon.html?_r=0, accessed Jan. 13, 2017.

민의 머리 부분에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²⁶⁵ 오히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폭력·과잉 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책임자들을 승진시켰다.²⁶⁶

7.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였던 2015년 4월,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상임운영위원을 기소했다.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일련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역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박래군과 김혜진의 경우 재판부는 2014년 7월 열린 세월호 참사 100일 도보 행진 시 해산명령 불응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²⁶⁷ 한상균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²⁶⁸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형사 소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²⁶⁹

38. [추가이슈] 세월호

1. 유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 1) 대한민국 경찰은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여한 유가족들에게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살포²⁷⁰하였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한 보고서²⁷¹에서 위 물대포 살포는 과도하게 신체 안전을

²⁶⁵ Go Yeong-deuk, "Baek Nam-gi dies, No apology from the police... the government dismissed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e Kyunghyang Shinmun, Sep. 25, 2016(in Korean), available at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9261700237&code=710100, accessed Jan. 13, 2017.

²⁶⁶ 최진, "민중총궐기 폭력진압 책임자들 승진", 카톨릭프레스, 2015.12.23, available at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1919&mcode=m164ex3>

²⁶⁷ 김수정, "'세월호 집회' 416연대 박래군, 김혜진 집행유예", 미디어스, 2016.1.22, available at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69>

²⁶⁸ Heo Jae-hyun, "Union leader gets stiffest sentence for rally organizer in S.Korea's post-democratization history", The Hankyoreh, July 5, 2016, available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51041.html, accessed Jan. 13, 2017.

²⁶⁹ Lee Seung-joon, "UN Special Rapporteur criticizes S. Korean government on rights to assembly", The Hankyoreh, June 17, 2016, available at http://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748622.html, accessed January 13, 2017.

²⁷⁰ 황인호, 「세월호 집회 캡사이신 사용량, 지난해 총량의 2.5배... 임수경 "상처 어루만지긴커녕"」, 국민일보, 2015. 4. 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77390&code=61121111&cp=ny>

²⁷¹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위험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2016년 6월에는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침입하여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양막을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²⁷²하였다. 또한,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²⁷³. 위와 같이 대한민국 경찰은 유가족들에 대하여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넘어선 고문행위에 다름 없는 비인도적 처우를 하였다.

2. 유가족들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과 블랙리스트 작성

- 1) 대한민국 정부는 2014. 6. 경부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친정부 시위를 기획·주도하였고,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하는 등 유가족들에 대한 비판여론을 형성²⁷⁴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참사와 관련한 여론을 차단하려 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해당 예술인들을 우수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²⁷⁵.
- 3) 법 지배의 주요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²⁷⁶.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위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등 국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였다.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등 국민들에게 극심한 내적, 외적 고통을 야기하는 고문행위에 다름없는 비인도적 처우이다.

3.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방해와 강제 해산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²⁷²이하늬, 「세월호 농성장 경찰 침탈, 유가족 강제 연행에 실신하기도」, 미디어오늘, 2016. 6. 26.,

²⁷³박수진, 「청와대앞에선‘7시간’이 금지어?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한겨레, 2016. 11. 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0619.html

²⁷⁴서영지, 「조윤선, 어버이연합 ‘반세월호 집회’ 열도록 주도」, 한겨레, 2017. 1.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364.html

²⁷⁵유희곤, 「블랙리스트 시작은 ‘세월호’였다」, 경향신문, 2017. 1. 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12002001

²⁷⁶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para 84

- 1) 대한민국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시종일관 비협조적이었고 방해로 하였다.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위원들을 법에서 정한 임기시작일로부터 2달여가 지난 시점에 임명하였고, 특조위 내에서 진상조사의 최고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다. 또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이 잦았고, 특조위의 조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조사방해를 조직적으로 꾀하기도 하였다²⁷⁷. 이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9조가 국가기관의 조사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시한 것이다²⁷⁸.

- 2)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9월 30일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조사는 더 이상 불가하고 7월 1일부터 3개월간 백서 작성 및 발간 활동만 할 수 있다며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²⁷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 1. 1. 이라는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이에 특조위는 인력 총원과 예산 지급 결정이 이루어져 특조위의 인적·물적 토대가 마련된 때인 2015년 8월 4일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7월 특조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조사를 위한 출장비와 조사관들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않았으며, 29명의 파견 공무원 중 12명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²⁸⁰. 이에 특조위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정당한 조사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는 특조위의 강제해산을 강행하였다.

- 3) 위와 같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법률상 보장된 조사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일 뿐만 아니라, 참사의 책임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에게 유가족들을 구제할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²⁸¹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²⁷⁷ 박다해,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여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머니투데이, 2015. 11. 1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908347632431&type=1>

²⁷⁸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 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²⁷⁹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²⁸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점검보고서(2014).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실. 22-24쪽.

²⁸¹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CAT/C/GC/3, para 7

39. [추가이슈]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문제

1. 현황

- 1)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술인(연극인, 화가, 사진가, 가수, 배우, 소설가, 시인, 만화가, 전통예술인, 극단, 영화제작사 포함)에 대한 지원 등에 개입한 사실이 2016 년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 검사부를 통해 밝혀졌다.²⁸²
- 2)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공공 지원사업에서 배제”,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등 정부 비판적인 작품들에 대한 전시, 상영 등에 외압 행사”, “이와 관련된 일련의 예술검열 과정을 공모하여 정책적으로 수립 및 관리”하였다.
- 3) 특별 검사부는 구속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28 회나 거론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 하였다. 그리고 이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1· 사법 연수원 23 기·구속기소)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전체 공소장 중 21 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수사에서 확인한 374 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명단을 특정 했다.²⁸³
- 4) 이와 관련하여 문화연대, 한국민예총, 예술인소셜유니온,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2 개 문화예술단체는 2016 년 12 월 12 일 특별 검사부에 김기춘, 조윤선(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2017 년 2 월 9 일 461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화연대는 같은 날 문화예술인 9473 명의 민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을 추가 고발하였다.²⁸⁴

2. 주요 문제점

²⁸² Choi Sang-hun, “South Korea’s blacklist of artists adds to outrage over presidential scandal”, The New York Times, Jan. 12, 2017,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17/01/12/world/asia/south-korea-president-park-blacklist-artists.html?_r=0, accessed Feb. 28, 2017.

²⁸³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당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공소장>(사건번호 특검2016년 형3호(분리), 2017년형제3호(분리), 2017년형제8호), 2017년 2월 7일

²⁸⁴ Euan McKirdy, “Hundreds of ‘blacklisted’ artists plan to sue South Korean government”, CNN, Feb. 8, 2017, available at <http://edition.cnn.com/2017/02/08/asia/south-korea-ex-culture-minister-indicted/>, accessed Feb. 28, 2017.

- 1)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된 예술 검열 정책인 블랙리스트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해당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사회적 전체적으로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자행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 2)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는 대한민국이 지향해 온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해당 문화예술인과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는 국가 폭력이다.

40. [추가이슈] 일본군 위안부

1. 2015. 12. 28. 한일 외무장관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아베총리의 사과를 표명하며 8.3백만달러 규모의 기금지원 등에 합의하였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밝혔다.²⁸⁵
2. 한국정부는 양국간 합의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생존피해자가 점차 줄어 가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²⁸⁶
3. 그러나 한국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 25년동안 요구해 온 요구사항—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법적배상, 재발방지 등을 무시하였다. 한국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²⁸⁷
4. 나아가 2015. 12. 28의 합의 후에도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인하거나 왜곡했고, 지원한 기금도 배상금 성격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에 대하여 항의하기는 커녕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였으며, 배상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기금의 수령을 종용했다.²⁸⁸
5. 생존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일관된 요구는 진상규명에 따른 공식 사과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배상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조치이다.²⁸⁹ 한국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원치않은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수용을 종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생존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²⁸⁵ <http://news1.kr/articles/?2528305>

²⁸⁶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5/0200000000AKR20161025165700014.HTML>

²⁸⁷ <http://slownews.kr/50205>

²⁸⁸ <http://heraldk.com/2017/02/26/그알-화해치유재단-위안부-할머니에-돈-받으라/>

²⁸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1800331&code=910100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연로하신 생존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6. 한일정부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생존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그 합의를 철회하고 생존피해자의 요구에 입각한 해결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한국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다가 한일합의 이후 그 지원을 중단하였다.²⁹⁰

41. [추가이슈]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1. 중앙합동신문센터(현재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명하였고, 이하 '합신센터'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국내입국 즉시 수용되는 곳이다.

2. 법적 문제

- 1) 합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나 법규정은 없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합니다) 제 7조 제1항, 제2항은 탈북자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장 등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에 다른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위 법규정들에 근거하여 합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위와 같이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이 시행령으로 합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탈북자들을 합신센터에 수용하는 것은 탈북자들이 수용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3) 또한 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의 보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일임하고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3. 관행상 문제

²⁹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5704.html>

- 1) 합신센터에 수용되었다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진술 및 합신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탈북자들은 합신센터에 입소하여 즉시 입고 있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알몸수색을 당한다. 수용자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다인실에서 생활하다가 조사가 시작되면 1인실에 수용된다. 많은 경우 1인실 수용은 10일에서 15일 정도라고 하지만, 시행령 제 12조 2항에서는 조사기간을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최장 180일 까지도 1인실 수용이 가능하다.
- 2) 1인실은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으며 방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방 내부와 심지어 화장실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1인실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에 수용자는 집중적으로 탈북 이유 및 신상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수용자는 외부와 일체의 연락이 금지되며 센터 내의 다른 입소자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는 아침부터 오후 저녁시간 까지 진행되고,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가 끝난 후에 수용자는 당일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기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 받는다.²⁹¹²⁹²
- 3) 합신센터 내에서 공무원인 조사관이 탈북 이유 등 정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수용자를 외부와 일체의 연락이 금지되고 24시간 cctv로 감시되는 1인실에 수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협약상 고문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협약 제2조 제2항은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고 하므로 국가 안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42. [추가이슈] 감염병 격리

1. 감염병 관련 격리 - 2015년 메르스

- 1) 2015년 5월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확인된 이래 2015년 10월 30일 오전 9시 현재 확진 인원 186명 중 사망자 37명(19.9%), 치료 중인 환자 4명(2.2%), 퇴원자 145명(78.0%)이고, 격리경험자는 16,752명에 이르렀다.²⁹³ 격리자가 가장 많았던 2015년 6월 18일 오전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6,729명이었고, 그 중 자가 격리자가 5,857명, 병원 격리자가 872명이었다.²⁹⁴

²⁹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6. 2014고합261 사건의 현장검증조서

²⁹² 허남설, 「[사건던(傳)]북한 건달이 보위사 직파간첩으로 몰렸다 무죄받은 사연...」국정원 수사관, 3류 첩보소설 쓰지마라더너」, 경향신문, 2016. 2. 28.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81019501&code=940301

²⁹³ <http://www.mers.go.kr/mers/html/jsp/main.jsp#>, 2015. 10. 30. 방문.

²⁹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 및 격리 현황』 (2015. 6. 18.), p.5.

- 2) 2015년 5월 첫 메르스 확진환자 확인 당시 구 감염병예방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정감염병 등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그 어디에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²⁹⁵ 정부는 메르스가 다른 병명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²⁹⁶ 다수의 국민이 그러한 사실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6일 법개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5호 머목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별도의 감염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전의 법적 공백을 인정했다. 결국 2015년 7월 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모든 강제입원 및 격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자의적 구급이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전에도 관련 법령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사태 발생 후에도 보건복지부고시의 제정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은 법의 공백 하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했고, 그 위법성에 대한 평가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구법과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격리의 기준은 여러 조항에 산재되어 있다. 즉,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병원체 인체 침입 의심되거나 감염병환자 확인 전 감염병의사환자, 임상적 증상 없는 감염병병원체 보유 병원체보유자)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1조 제3항 제2호),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제47조 제2호) 등이 그 기준이다. 그러나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경우가 아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병원체 인체 침입 의심”이나 “감염병병원체 감염 의심”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등 의문이 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격리의 요건 관련 규정들은 이처럼 최소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잠복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전염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14일 잠복기 중에도 일괄적으로 격리 조치가 취해졌다²⁹⁷는 점이다.
- 4) 구법 및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증표의 제시(제42조 제2항)와 격리의 통지(제41조 및 제43조)가 격리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보장받는 절차적 권리이다. 통지의 주체는 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에 의하면 ‘이름, 주민번호,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시설(병의원/주택/시설 주소)’ 등의 항목과 더불어 근거 법률규정, 불응시 처벌에 대해 통지한다. 시설격리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 중이던 병원의 이사장이 구두로 병원격리를 통지하고, 그 배우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그 자녀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²⁹⁸ 등 법률에

²⁹⁵ 청년의사, “[특별기고] 메르스(MERS)가 재난이 아닌 이유 : 충남대의전원 유인술 교수 ”법으로 정한 재난 정의와 감염병에 메르스는 포함 안돼”, 2015. 6. 17.

²⁹⁶ 윤종태,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 『의료법학』 제 16 권 제 2 호 (2015), pp.268, 272.

²⁹⁷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 지침』 (2015. 5. 25.), p.12.

²⁹⁸ 대한변협 메르스 시설격리경험자 A 심층면접 결과(2015. 8. 1.).

규정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시설 격리에 대해서도 인신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시설 격리자들은 중 인신보호법 상 구제청구²⁹⁹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모든 메르스 관련 시설 격리는 법률의 명시적인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격리였다고 볼 수 있다.

- 5) 현행 2015년 12월 29일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격리 절차 등과 관련하여 증표의 제시 의무자의 확대(제42조 제3항),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조사거부자에 대한 격리조치 즉시 해제(제42조 제6항), 부당하게 격리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조사거부자의 인신구제청구권(제42조 제8항)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인신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격리가 아닌 특정상황에 놓인 조사거부자로만 제한하는 해석될 위험이 있다. 현행 격리제도는 또한 격리 시 사법기관의 개입이 전무하다. 입원을 권고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를 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전무하다. 격리대상자를 격리한 때에는 격리대상자 및 가족, 동료 등에게 격리원인병명, 격리의 일시, 장소, 방법, 격리사실의 요지, 격리의 이유,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통지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일반적인 불복절차를 고려하기는 어려운 격리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격리자의 인권을 배려한 즉각적인 불복수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이의제도는 없다.³⁰⁰ 인권보장을 위하여 격리된 사람의 외부와의 교통, 특히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된 법제가 없다.
- 6)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 중 생계,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생계지원이나 입원치료지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실현할 수 없었다. 메르스 사태가 나고 한달이 지난 2015년 6월 16일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고³⁰¹ 그것도 전화상담이 주를 이뤘을 뿐이다.³⁰² 2015년 7월 6일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에서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보상과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지만 예전 지원에 비추어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또한 현행 2015년 12월 29일 개정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그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격리된 사람들이 아닌 주로 의료기관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²⁹⁹ 인신보호법 제 3 조의 2.

³⁰⁰ 박정일,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제 16 권 제 1 호 (2015), p.306 참조.

³⁰¹ YTN, “"격리된 환자 방문해 상담 지원할 것" (브리핑 전문)”, 2015. 6. 16.

³⁰² 연합뉴스, “메르스 완치자 40% "불안"…유가족은 우울증”, 2015. 7. 17.

43. [추가이슈] 보호감호, 보호수용, 보호관찰

1. 보호감호/보호수용

- 1) 자의적 구금 및 거듭처벌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보호법폐지법률의 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보호감호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거나 당시 보호감호 집행 중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그 폐지 적용의 예외를 두었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이후에도 실제로 이에 따른 수감자가 총 677명에 이르며, 현재 134명이 보호감호 중이다. 2020년까지 102명이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³⁰³
- 2) 나아가 2014년에 이어 2016년 11월 한국정부는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한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예고했다.³⁰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형기종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16. 11.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선된 보호수용법이 자유를 박탈한다는 본질에 있어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고 보호수용 명령 요건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³⁰⁵

2. 보호관찰

- 1) 보호관찰제도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이 있다. 이 중 보호관찰은 주로 형사법원이 형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며 그 조건으로 부과된다. 또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잔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소년부 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처분(보호관찰 기간 6개월)이나 보호관찰처분(보호관찰 기간 2년)을 받은 소년범도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되며 소년원에서 가퇴원, 가석방되는 경우에도 6개월 - 2년의 보호관찰 기간이 적용된다.
- 2)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사회와 단절시키지 않고 가정과 직장 등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토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는 심적, 물질 고통을 줄여 재범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그러나 최근 보호관찰제도가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에 대한 정치사찰로 확대되고 있다.³⁰⁶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련 수감자도

³⁰³ 2013년 법무부 정보공개자료

³⁰⁴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35529&mappingLbicId=2000000177048&announceType=TYPE5>

³⁰⁵

<http://www.nhrc.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5&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612930>

³⁰⁶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24/0200000000AKR20140224071700004.HTML>

출소 이후 보호관찰에 처해져 이중처벌과 다름없는 처우를 받는다.

44. [추가이슈] 군영창

1. 한국의 군대는 특수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영창’이다.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규정하면서 강등, 휴가 제한, 근신 외에 ‘영창’을 규정하고 있다. 영창은 군 부대 또는 함정 내에 설치되는 구금시설이다. 영창에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징계권자는 중대장 등 일선지휘관이다. 일선지휘관은 품위 손상이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으로 병사를 군영창에 입감할 수 있다.³⁰⁷
2. 병사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이므로 군영창은 ‘신체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이다. 또한 이는 형법에 정한 형벌인 ‘구류’형과 내용적으로 다를 바 없다.³⁰⁸ 실제로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미결수들과 같은 시설에 구금된다고 알려져 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인신구속을 할 수 있도록 ‘영장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군영창은 그 집행 과정에서 영장은 물론 어떠한 법원의 사전, 사후 통제 없이 일선지휘관의 독자적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3. 사법 절차 내지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현장의 일선지휘관이 영창처분 부과 사유의 존재 및 구금 일수를 정하기 때문에 일선지휘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으로 영창처분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영창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존폐논란이 있자 2006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으나, 그 후에도 영창에 구금되는 병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아래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영창 입

³⁰⁷ [군인사법]

제 56 조(징계 사유) 제 58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8 조의 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 58 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³⁰⁸ 국회입법조사처, (2013)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제221호, 27면

감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비행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50,042명의 병사 중 약 31.3%에 달하는 15,683명의 병사가 영창처분을 받았다.³⁰⁹

[표 1] 최근 10년간(2003~2012) 병 징계처분 현황

(단위: 건,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징계처분											
강등	37 (0.19)	0 (0)	0 (0)	0 (0)	5 (0.02)	3 (0.01)	5 (0.02)	9 (0.02)	19 (0.04)	14 (0.03)	92 (0.03)
영창	13,779 (69.4)	12,513 (62.0)	10,193 (47.8)	10,265 (42.3)	8,960 (35.9)	9,315 (31.6)	11,834 (33.3)	12,763 (33.1)	14,757 (33.0)	15,683 (31.3)	120,062 (38.9)
휴가제한	5,463 (27.5)	6,680 (33.1)	8,269 (38.7)	10,505 (43.2)	12,377 (49.6)	16,175 (54.9)	19,292 (54.2)	21,416 (55.6)	25,376 (56.8)	29,078 (58.1)	154,631 (50.1)
근신	580 (2.9)	997 (4.9)	2,878 (13.5)	3,524 (14.5)	3,624 (14.5)	3,979 (13.5)	4,435 (12.5)	4,339 (11.3)	4,537 (10.2)	5,267 (10.5)	34,160 (11.1)
합계	19,859	20,190	21,340	24,294	24,966	29,472	35,566	38,527	44,689	50,042	308,945

주: ()은 비중. 강등 비중의 경우 수치표기의 편의상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
출처: 국방부 제출자료(2013.7.17.).

- 영창처분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에 대해 항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드물다. 군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쉽지 않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는 군의 속성상 지휘관의 처분에 대해 병사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군에서 병사에게 군영창 처분과 이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영창 내에서도 수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³¹⁰
- 또한 영창 시설의 설치, 법적 지위나 처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가 형사범인 미결구금자의 처우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1. 29.자 권고를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징계입창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 △일정한 기준 없이 면회 및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충분한 실외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구비할 것, △신체검사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을 구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³¹¹
- 나아가 군영창에 구금된 기간은 병사의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병역법 제18조 제3항)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결과적으로 군복무기간이 그만큼 늘

³⁰⁹ 국회입법조사처, 위 보고서, 3면.

³¹⁰ 국가인권위원회, 2013.6.12.자, 13-진정-0207100 결정

³¹¹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군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13. 11. 29.

어난다.³¹² 이는 이중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영창제도가 장교나 부사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독 ‘병사’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없이 병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7. 군영창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 등에 반하는 인신구속으로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정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의 한 유형으로 유지되는 군영창 제도는 폐지되거나, 적어도 형사소송법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의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영창에 입감된 병사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추가이슈] 성소수자

1. 한국 성소수자들은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다는 전환치료를 당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성별인정 혹은 병역면제판정을 위한 비가역적 외과적 수술을 강요당한다. 인터섹스 영아들은 자신이나 부모들의 동의(informed consent) 없이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이나 외과적 수술을 받는다. 트랜스젠더 수형자는 수형시설 내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처우를 받지 못하며 성별표현으로 인하여 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고문방지협약위원회와 다른 유엔 기구로부터 고문 혹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들이며, 이 협약 위반 행위들은 한국의 성소수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2. 전환치료

- 1) 많은 유엔 인권 관련 기구와 의료 커뮤니티는 소위 “전환치료”를 규탄한다.³¹³ 하지만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한국의 성소수자 중 20.3%가 ‘동성애는

³¹² 병역법 제 18 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³¹³ CESCR, *General comment No. 22 (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 March 2016, E/C.12/GC/22. at para. 23. “Likewise, regulations ... or requiring that they be “cured” by so-called “treatment”, are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tate parties also have an obligation to combat homophobia and transphobia, which lead to discrimination, including violation of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t para. 88. “The Special Rapporteur calls upon all States to repeal any law allowing ... “reparative therapies” or “conversion therapies”, when enforced or administer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5 January 2016, A/HRC/31/57. At para. 48.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are frequently denied medical treatment and subjected to verbal abuse and public humiliation, psychiatric evaluations, forced procedures such as sterilization, “conversion” therapy, hormone therapy and genital-normalizing surgeries under the guise of “reparative therapies”. Also, see A/HRC/22/53.

치료할 수 있다’는 비전문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상담을 받았다.³¹⁴ 이런 발언은 심리상담가, 종교인, 의사, 상담교사 등에 의해 행해졌다.

- 2) “전환치료”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폭력과 증오범죄로도 이어진다. 2016 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가족에 의하여 종교적 전환치료 시설에 강제입소된 후 전환치료를 병자한 폭행을 당하다가 탈출한 사건이 보도되었다.³¹⁵
- 3) 일부 종교계에서는 전환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탈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며 성적지향이 ‘치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전문가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15 년 자유권 위원회는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 했으나³¹⁶, 전환치료와 관련된 행사는 여전히 국회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³¹⁷ 되고 있다³¹⁸.

3.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 1) 유엔 고문 보고관은 몇몇 국가들이 트랜스젠더의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원치 않는 생식능력제거수술을 요구하는 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바 있다.³¹⁹ 또한 지난 자유권규약심의회에서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권고와 그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 받았다³²⁰.
- 2) 한국은 2006년 대법원 결정³²¹ 이후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예규에 의해서 성별정

³¹⁴ Ko Han-sol, Depressed LGBT youth told by counselor, “Choose not to be gay”, The Hankyoreh, 2017. 2. 24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84066.html

³¹⁵ 이은혜, 「트랜스젠더, 때리면 치유되나요? - 성소수자 이해 없는 목사의 치유 상담... 귀신 내쫓는다며 황당 강의」, 뉴스엔조이, 2016.03.02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1>

³¹⁶ “15. The State Party should ... avoid the usage of State-owned buildings by private organizations for so-called ‘conversion therapies’...” CCPR/C/KOR/4 at para. 15.

³¹⁷ Darren Wee, 「South Korean government slammed for hosting ‘conversion therapy’ seminars」, Gay Star News, 8 April 2015. <http://www.gaystarnews.com/article/south-korea-government-slammed-hosting-conversion-therapy-seminars080415>

³¹⁸ Outright, 「Outright Letter To Officials About State Endorsement Of Conversion Therapy For Gays And Lesbians In South Korea」, 2015.04.07 <https://www.outrightinternational.org/content/outright-letter-officials-about-state-endorsement-conversion-therapy-gays-and-lesbians-south>

³¹⁹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February 2013, A/HRC/22/53. (“In many countries transgender persons are required to undergo often unwanted sterilization surgeries as a prerequisite to enjoy legal recognition of their preferred gender.”)

³²⁰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KOR/CCPR_C_KOR_CO_4_22217_E.doc

³²¹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 【개명·호적정정】 [집54(1)가,290;공 2006.8.1.(255),1341]

정의 조사 사항이 제시된다³²². 재량을 함의하는 ‘조사사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원은 사실상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예규에 의하면, 성년에 도달해야 하고³²³, 혼인 중이 아니며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성인 중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며 생식능력제거수술을 받은 사람만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부모의 동의서 등도 조사사항에 포함된다. 한편 외부성기성형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위법원 판례가 있으나 이는 몇몇 케이스에 불과하며 일반화 되어있지는 않다. 이 중에서도 불임수술 요건은 성별 인정을 위하여 트랜스젠더에게 일률적이고 침습적인 시술을 강요하여 자기결정권과 신체온전성을 침해하며 재생산권도 제한한다.

4. 트랜스젠더 신체 침해 강요

- 1) 병무청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병역 판정에 있어 트랜스젠더의 신체온전성을 침해하는 불가역적 수술을 관행적으로 요구한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MTF 트랜스젠더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성주체성장애로 분류되며,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로 장애의 경/중/고도 평가³²⁴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군의관의 개인적 판단에 평가를 맡기고 있다. 검사 규칙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외관상 확인이 가능할 때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7조(검사의 일부 생략)과 8조(검사의 방법 등) 2항 10호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에 의하여 객관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성주체성장애의 판단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기능평가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 2) 또한 병무청은 병역 면탈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입영 보류 판정³²⁵을 내리고 고환 적출, 성전환수술 등 외형으로 보일 수 있는 비가역적인 수술을 요구 한다. 이렇게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 온전성, 자율성, 자

³²²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시행 2015. 2. 1.] http://annual.sogilaw.org/review/law_list_en

³²³ 이는 이미 독일에서는 위헌으로 판결이 난 바가 있다. 1993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BVerf 88, 87 = NJW 1993, 1517

³²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중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정신건강의학과 항목 102 호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7 급)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3 급) [주: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란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65 점 초과로 한다.]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4 급)
 라.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급)

³²⁵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 판정)2항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 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기결정권과 무관하게 병역 면제 판정을 위한 수술을 강요 받고 있다³²⁶.

5.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

- 1) 정부는 2007년 12월 21일 기존의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다. 전면 개정된 형 집행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性的) 지향’을 추가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개별 처우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수용전력, 성기 제거 수술 및 약물투여 여부 등, 의무관의 확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로 파악”한다며 2013년 9월 27일 당시 트랜스젠더 7명을 수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전환 수술 등으로 남·여 성별이 불분명한 자가 신입 입소한 경우, 의무관 및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성별 판단을 받아 수용거실을 지정하고 있으며, 성희롱,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해 독거수용, 칸막이 설치 등 계호를 보강하고, 수시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³²⁷ 즉,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을 기준으로 수용동에 수용하되 독거수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수용자와 구분 수용을 할 뿐이다. 이에 따라 운동, 목욕 등 같은 수용동의 다른 수용자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생활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2) 이러한 경우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수용자들과 혼거하거나 샤워, 탈의 등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의 자율성에 심각한 침해로 유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실제로 MTF 트랜스젠더가 남성수용시설에 수감되었다가 자살을 시도한 사례³²⁸가 있었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형시설내에서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수용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수형시설이 운영되어 트랜스젠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MTF 트랜스젠더에게 이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독방에 감금하는 징벌을 내리는 사례가 있었다³²⁹.

6. 인터섹스

- 1) 비전형적인 성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영아들은 자신이나 부모들의 충분한 설

³²⁶ SOGILAW,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4, “A transgender person files a peti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response to the surgery requirement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http://annual.sogilaw.org/review/review_2014_en/509

갈홍식, 「병무청 “트랜스젠더 고환 없어야 군면제” 자의적 기준 적용 - 2012년부터 고환 적출 군면제 104건, 정신과 면제의 5배」, 비마이너, 2015.09.1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8798&thread=04r01&reply_order=ban

³²⁷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³²⁸ 송윤세, 「트랜스젠더 수감자 배려안한 교도소... 국가배상 책임」, 뉴시스, 2011.01.0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10104_0007074879

³²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493, 광주고등법원 2014누6530

명 청취 후 동의 없이 비가역적 성별 지정, 비자발적 불임수술, 비자발적 성기 정상화 수술의 대상이 된다.³³⁰

- 2) 한국사회에서 인터섹스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³³¹ 통계적으로 한국의 신생아는 연간 약 450천 명이고, 0.1%인 450여명의 신생아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추정된다.³³² 추가적으로 인터섹스로 포함되는 집단을 포함하면 인구의 1.7% 정도이다. 따라서 인터섹스 신생아는 1년에 7,650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상담이 제공되지 않는다. 2014년 생후 1개월인 자신의 영아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비관하여 어머니가 영아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³³³³³⁴
- 3)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법상 반드시 남성, 여성 중에서 한 성별을 기입해야 한다. 추후에 이를 정정하려면 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회화 및 공공 교육과정중에도 부모, 교사 등이 성별 이분법을 바탕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부모들은 영아의 동의 없이 성별을 결정하여 비가역적 수술을 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여아는 12개월 전에, 남아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교정’하는 것³³⁵으로 알려져 있다.

³³⁰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5 January 2016, A/HRC/31/57. At para. 50. “In many States, children born with atypical sex characteristics are often subject to irreversible sex assignment, involuntary sterilization and genital normalizing surgery, which are performed without their informed consent or that of their parents, leaving them with permanent, irreversible infertility, causing severe mental suffering and contributing to stigmatization. In some cases, taboo and stigma lead to the killing of intersex infants.”

³³¹ ³³¹ 2015년, 건강보험공간에 치료비를 청구한 인터섹스의 수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3thDslInfo.do>

³³²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375>

³³³ 박수지, 「긴머리 자르라는 지시 거부했다고 트랜스젠더 수형자에 과잉징벌」, 한겨레, 2014.03.1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27842.html>

³³⁴ 장덕종, 「헌직 경찰관. 생후 1개월 아들, 숨진채 발견」, 연합뉴스, 2014.12.23,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23/story_n_6370630.html

³³⁵ 이유명, 「'남자야, 여자야?' 애매한 신생아, 성별은?」, 메디컬투데이, 2007.06.28, <http://www.mdtoday.co.kr/mdtoday/?no=26865&cate=0&sub=&key=&word=&page=9419>

46. [추가이슈] 교정시설 내 HIV/AIDS 처우

1. 세계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HIV강제검사는 금지되어야 하고, 자발적 HIV검사는 충분한 사전, 사후상담과 함께 고지된 동의가 있을 때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검사결과는 의료적 비밀보장을 해야 하는 의료인에 의해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교정시설 행정관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HIV감염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수용자의 서류철, 감방 또는 페이퍼에 표식, 라벨, 도장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사인을 붙여서는 안 된다. 또 수용자에게 직업활동, 운동,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제한과 분리, 격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에이즈와 연관된 면역결핍이 있는 수용자를 위해 보호적인 격리가 요구될 수 있지만 재소자의 고지된 동의가 있을 때만 수행되어야 한다.³³⁶
2. 하지만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입자 모두에게 HIV강제검사를 실시하고, HIV감염인을 분리수용(격리수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281호]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3항은 “신입자는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입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용자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109호] 제3조(신입자 건강진단) 5항은 위 법률 제16조에 의한 신입자 건강진단 시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1조(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관리) 1항은 “소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자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2항은 분리수용(격리수용)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수용자는 본인도 모른 채 HIV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가 본인에게만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게 보고되며, 즉시 분리수용된다. 이때 분리수용은 독거수용뿐 아니라 운동, 이발, 목욕 등을 따로 하게 하고, 종교집회, 교육, 직업훈련직업활동 등에서 배제하여 HIV감염인은 모든 생활이 분리된다. 극심한 고립감과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살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³³⁷.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 16일 “감염자 또는 감염의 의심이 있는 수용자는 즉시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관리 2항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2013년 12월 5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분리 수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³³⁸. 하지만 실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분리수용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HIV감염사실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D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 현황판에 재소자 이름옆에 ‘HIV’라고 표시를 하여 방문자나 면회 온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흡한 의료조치로 건강권을 침해당하기도 한다. 2015년 3월

³³⁶ WHO guidelines on HIV infection and AIDS in prisons(1999), UNODC/WHO/UNAIDS Policy Brief: HIV testing & Counselling in prison & other closed settings(2009)

³³⁷ 인권위원회, 11-진정-0571300, 교정시설의 HIV 감염인에 대한 격리, 2011.10.10, 인권위원회 12-진정-0094800, 교정시설의 HIV 감염인에 대한 격리, 2012.02.15

³³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장 환자관리 제11조(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관리) 2항

http://www.korealaw.go.kr/admRulLsInfoP.do;jsessionid=wxwFTOIY1MDm6U79RichhmFrxd4HhAwMuW47EY1JhQ5MxmWTqoXjBRsSa1t4eaKp.de_kl_a5_servlet_LSW2?admRulSeq=2000000026311

28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HIV감염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항레트로바이러스제(ARV)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고, 장기간 구금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담당 변호사가 형집행정지신청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대상포진, 피부발진 등으로 더 이상 수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회감염의 위험성 및 약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³³⁹. 게다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20조(이송대상 혈액투석환자)는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대상에서 “에이즈 감염 등 감염병에 이환된자”를 제외하고 있다.

³³⁹ 김중훈, 「"사랑한 죄로..." 법정서 죽어가는 트랜스젠더 : '마약 혐의' A 씨 "에이즈로 투병, 구치소 약 제때 안줘...병세 악화"」, 머니투데이, 2015. 8. 25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82413520830774&MVB&MVP>